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2014. 12.

김 학 수

서 언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과거 국민의 정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정책부문 중 조세정책 분야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가 서비스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국민의 정부를 비롯하여 각 정부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보다 많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왔으나 산업별 조세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의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사이의 조세격차를 축소하고 서비스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본원 조세연구본부의 김학수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저자는 본 연구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원내외 토론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본 보고서의 외부심사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익명의 외부검토자들에게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 의견이며, 저자가 속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 정부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고용유발 효과 및 경제 전반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온 서비스 산업이 보다 빨리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므로 산업별 실효세율 비교를 통해 차별적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이러한 산업별 차별적 조세체계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 보고 전반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1년 이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교 대상 국가들의 경우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이 우리보다 낮거나 지속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마다 수행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부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왔던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에 의해 나타나는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의 차이는 동일한 소득규모의 법인에 대해 세부담을 달리한 결과물이다. 이는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인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면서 특정 산업에 낮은 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육성하거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별 차별적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명확하

지 않은 실증분석의 문제이다. 산업별 조세격차는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훼손한다. 경제의 효율성 훼손은 성장을 저해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산업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다른 산업들로 파급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이러한 차별적 조세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때 산업별로 차별적인 조세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로부터 긍정적 성장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산업과 최적 수준의 세율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산업과 세율수준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2000년 이후의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를 아래와 같이 국제통계연보의 산업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보다 높으면서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처럼 조세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는 국가들로는 미국 이외에 덴마크, 독일, 영국이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은 우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호주, 캐나다, 헝가리, 일본, 스페인 등은 조세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큰 변동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의 산업별 조세격차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와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높을수록, 실질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는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조세격차가 전반적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노동시장 규제가 낮을수록, 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산업별 조세격차가 낮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경우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 성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GDP 성장률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성장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노동시장의 규제가 약할수록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분석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추정결과를 뒷받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OECD 국가들 중 11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제조업의 성장세가 서비스 산업의 고용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추정계수는 노동시장 규제 정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추정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며 법인세율 인하가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도의 제고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 왔으나 제조업 성장에 기인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OECD와 같이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법인세 정책 방향은 먼저 법인세 신고법인의 22%에 불과한 제조업 중사 법인들이 70.8%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현재의 차별적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현재의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현재 총부담세액 기준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인 17%가 산출세액 기준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인 5.2% 수준으로 낮아지면, 약 1.4%포인트 정도

의 실질 GDP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경우 약 2.6~5.3% 포인트의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기존에 특정산업에 주었던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함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가 상쇄하고 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별 조세격차를 17%에서 5%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정도 세수 중립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다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약 1.8%포인트 제고될 수 있으며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최소 0.8% 정도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세수중립적 법인세율 인하에 의해 약 2.5~3.8%포인트 확대되고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에 따라 약 0.7~1.8%포인트 정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은 조세왜곡을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비과세 감면제도도 이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혜택은 축소되어야 하고 정책대상자의 폭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업종들만을 정책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진화가 무한히 지속되어야 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는 제조업 성장 중심의 조세제도에 의해 확대된 산업별 조세격차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초래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지원받은 산업의 성장으로부터 과급되는 경제적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세수감

소와 함께 또 다른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제도의 정책대상자를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인적 자본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 및 인력개발 이외에 시장관련 Database, 새로운 건축디자인, 광고, 경영자문, 시장조사에 지출되는 비용을 투자활동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지출을 투자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물질 자본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전통적 제조업종 보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직접적 혜택의 확대와 함께 제조업종과의 조세격차 축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세수감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설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성향이나 특정한 경제행위 수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지위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본은 물질자본과 달리 무형자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7
II.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20
1. 서비스 산업의 현황	20
가.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 추이	20
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추이	23
2.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위상	24
가.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 추이 비교	24
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추이 비교	28
III.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의 변화	32
1. 국민의 정부	33
2. 참여정부	36
3. 이명박 정부	40
4. 박근혜 정부	44
IV. 산업별 조세격차와 경제성장	46
1.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 측정방법 및 사용자료	47
2. 우리나라의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과 변이계수 추이	50
3.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54
가. 4개 대분류 산업 기준 조세격차 추이 비교	54
1) 조세격차 확대 추이 유형	54
2) 조세격차 축소 추이 유형	56
3) 큰 변동이 없는 유형	57

나. 13개 산업 기준 조세격차 추이 비교	59
다. 산업별 감면을 수준 비교	71
1) 전 산업 대비 제조업 평균 감면을 차이 비교	73
2) 전 산업 대비 금융보험업 평균 감면을 차이 비교	74
3) 전 산업 대비 기타 서비스업 평균 감면을 차이 비교	76
4)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평균 감면을 차이 비교	77
4. 산업별 조세격차와 경제적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78
가. 전체 경제성장 및 고용률	78
나. 서비스 산업의 성장	83
V. 경제 서비스화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86
1. 세수 중립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	86
2. 비과세 감면제도의 혜택 축소 및 정책대상 확대	89
3. 서비스 산업을 위한 개별 지원제도에 대한 고려	90
VI. 결 론	92
참고문헌	94
〈부록 I〉 산업별 조세격차 측정상 국가별 산업분류	97
〈부록 II〉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체계와 최근 동향	101

표목차

〈표 II-1〉 기간별 성장률 비교	22
〈표 II-2〉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 실질 GDP 기준	26
〈표 II-3〉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	30
〈표 III-1〉 2001년 이후 국민의 정부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	34
〈표 III-2〉 참여정부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	37
〈표 III-3〉 이명박 정부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	42
〈표 III-4〉 박근혜 정부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	45
〈표 IV-1〉 변이계수 유형별 산업 구분	48
〈표 IV-2〉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한국	53
〈표 IV-3〉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미국	61
〈표 IV-4〉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영국	62
〈표 IV-5〉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호주	63
〈표 IV-6〉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캐나다	64
〈표 IV-7〉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덴마크	65
〈표 IV-8〉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독일	66
〈표 IV-9〉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헝가리	67
〈표 IV-10〉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일본	68
〈표 IV-11〉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노르웨이	69
〈표 IV-12〉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스페인	70
〈표 IV-13〉 산업별 조세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80
〈표 IV-14〉 산업별 조세격차가 고용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82
〈표 IV-15〉 산업별 조세격차가 서비스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84

〈표 IV-16〉 산업별 조세격차가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 제고에 미치는 영향 85

〈표 V-1〉 산업별 조세지출 비중: 신고연도 2012년 기준 88

〈부표 I-1〉 국가별 산업분류 비교 97

〈부표 II-1〉 국제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추이: 국세분 104

〈부표 II-2〉 국제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추이: 지방세분 포함 105

〈부표 II-3〉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구조 비교: 2014년 기준 106

〈부표 II-4〉 미국의 법인세율 107

〈부표 II-5〉 영국의 법인세율 108

〈부표 II-6〉 벨기에의 법인세율 109

〈부표 II-7〉 프랑스의 법인세율 110

〈부표 II-8〉 일본의 법인세율 110

〈부표 II-9〉 캐나다의 법인세율 111

〈부표 II-10〉 헝가리의 법인세율 111

〈부표 II-11〉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112

〈부표 II-12〉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112

〈부표 II-13〉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112

그림목차

[그림 II-1]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 비중 추이	20
[그림 II-2] 성장률 추이 비교	21
[그림 II-3]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 추이	23
[그림 II-4]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2010년)	25
[그림 II-5]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비교: 2010년 기준	28
[그림 IV-1] 주요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과 조세격차 추이: 한국	52
[그림 IV-2] 4개 대분류 산업 기준 조세격차(CV_{w1}) 추이 비교	58
[그림 IV-3] 13개 산업 기준 조세격차(CV_{w2}) 추이 비교	60
[그림 IV-4] 전 산업 법인세 평균 감면을 추이 비교	73
[그림 IV-5] 전 산업 대비 제조업 법인세 평균 감면을 차이 비교	74
[그림 IV-6] 전 산업 대비 금융보험업 법인세 평균 감면을 차이 비교	75
[그림 IV-7] 전 산업 대비 기타 서비스업 법인세 평균 감면을 차이 비교	76
[그림 IV-8]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법인세 평균 감면을 차이 비교	77
[부도 II-1]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비교: 2013년 기준	101

I. 서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약화된 제조업의 역할을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과거 국민의 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공유되어 왔으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를 제고하고 서비스업 자체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 정부들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규제완화부터 금융·세제상의 차별적 요인들을 완화하는 정책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고용비중, 생산성 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와 이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는 우리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나 고용비중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매우 저조하며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는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고용유발 효과 및 경제 전반의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되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므로 산업별 실효세율 비교를 통해 차별적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이러한 산업별 차별적 조세체계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 보고 전반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ECD(2005)와 김주훈·차문중(2007)을 비롯한 박필재(2014), 강준구(2010), 박연숙·최성호(2006) 등 기존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세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의 필요성 정도를 제기하고 있다.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여타 산업들에 속한 기업들의 실효세율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별 실효세율 관련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에 의해 나타나는 산업별 실효세율의 차이는 동일한 소득규모에 대해 세부담을 달리 부과한 결과이고 이는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는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한 경제효율성 훼손을 초래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중요한 원칙과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면서 산업별로 다른 세부담을 부과하는 조세정책은 특정 산업 육성 및 경기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업종으로부터 유발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산업별 조세격차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크지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된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 업종별 조세부담의 격차가 얼마나 크며 어떠한 추이로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응한 조세정책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후 제Ⅲ장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들 중에서 조세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 대책들을 정리하고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 분석대상 국가들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과 추이를 비교·검토하고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11개 OECD 국가들의 패널자

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조세격차가 경제 전반의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V 장은 앞서 논의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과 기대효과를 논의한다. 끝으로 제 VI 장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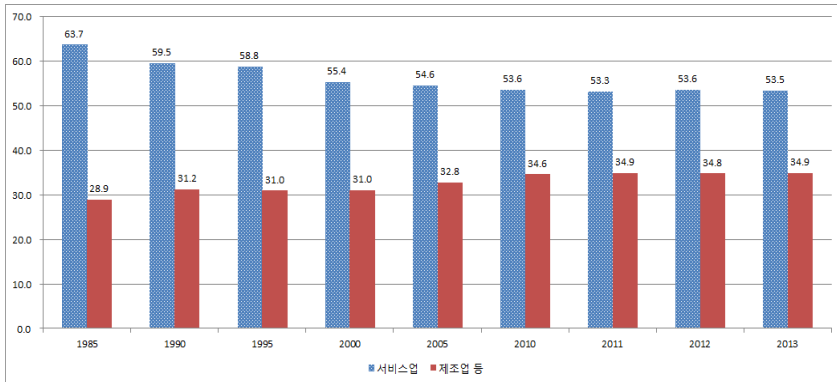
1. 서비스 산업의 현황

가.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 추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II-1]을 살펴 보면, 1985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전체 GDP의 63.7% 수준에 달했으나 이후 1995년 58.8%, 2005년 54.6% 등 추세적 하락양상을 보이며 2010년 이후 53.5% 안팎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는 경제규모의 53.5% 수준이고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포함한 제조업 등 산업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34.9%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 비중 축소는 서비스 산업의 낮은 성장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 비중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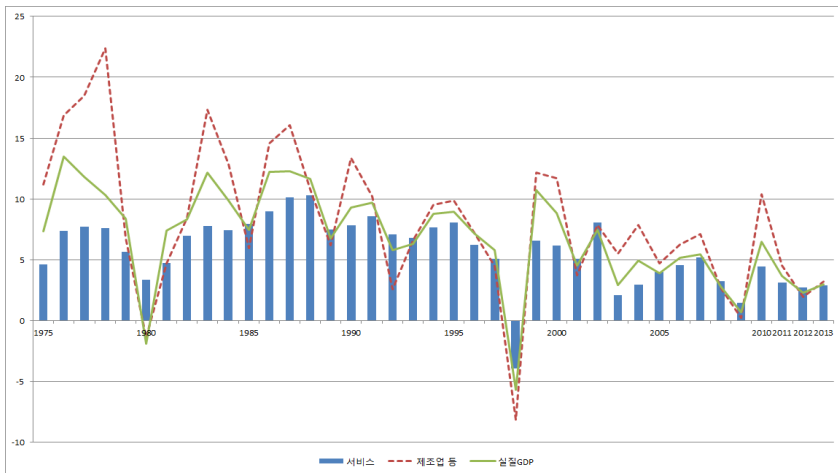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1988년 10.3%를 정점으로 이전까지는 추세적 개선양상을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그림 II-2]에서 쉽게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등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전체 GDP 성장률을 하회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 이후 추세적으로 개선되던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II-2] 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둔화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제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성장률이 저조한 가운데 제조업 성장의 한계와 제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더욱 두드러지며 현재의 성장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간별 성장률을 비교하고 있는

〈표 II-1〉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관측된다. 200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실질 GDP는 연평균 5.6%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2008년 이후 연평균 3.2%씩 성장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은 경제 전체 실질 GDP 성장률을 상회하며 전체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를 하회하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기간별 성장률 비교

(단위: %)

	서비스	제조업 등	실질 GDP
1980~1988	8.0	11.2	10.2
1988~1998	6.0	6.3	6.2
1998~2008	4.8	6.9	5.6
2008~2013	2.9	4.0	3.2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것이 주요 선진국들이 보였던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은 여타 선진국들과는 다른 양상임에 틀림 없고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보다 개선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공유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매 정부마다 발표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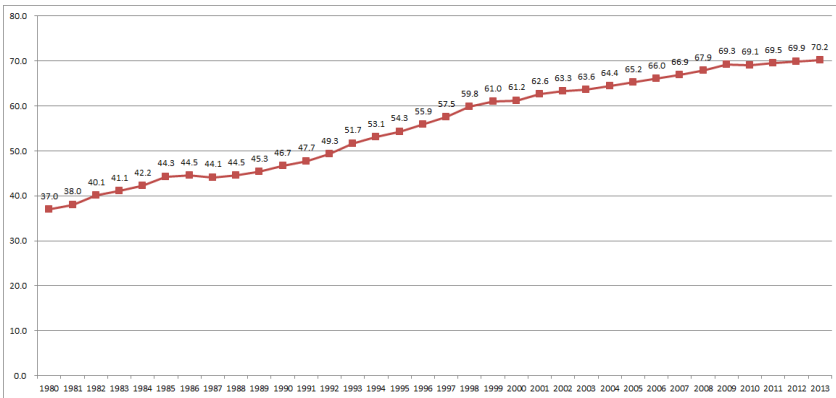
1) 각 정부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서비스업종을 선정하고 2000년 이후 수십여 차례의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정부의 대책들 중 세부 분야에 포함된 대책들은 정부별로 정리하여 제Ⅲ장에서 살펴본다.

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추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60%를 넘어섰다.²⁾ [그림 II-3]을 살펴보면, 1980년 37%에 불과하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이후 추세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1990년대에 빠르게 확대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확대 추이는 크게 둔화된 상태이다.

[그림 II-3]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 추이

(단위: %)



자료: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2. 한국의 2010년 이후 자료는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980년 37%이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1986년까지 연평균 1.25%포인트씩 확대되며 1986년 44.5%로 확대된 이후 1987년 소폭 감소하여 44.1%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 반전하여 1999년까지 연평균 1.41% 포인트씩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며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은 1999년 61%를 기록했다. 이후 2008년까지 연평균 0.77%포인트의 둔화된 증가세를 보였고 2009년 69.5%의 비중을 보인 이후 69%대에 정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100×(서비스 산업 취업자 수/전 산업 취업자 수)

2013년에 이르러서야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이 70%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제고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서비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고용이 유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되며 고용유발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완하여 우리 경제의 고용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서비스 산업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의 국제비교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주요 선진국들 고용비중의 평균 수준인 70%를 지속적으로 하회해 오다가 2012년에야 OECD 평균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룩셈부르크, 영국 등은 80% 안팎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잘 성장하게 될 경우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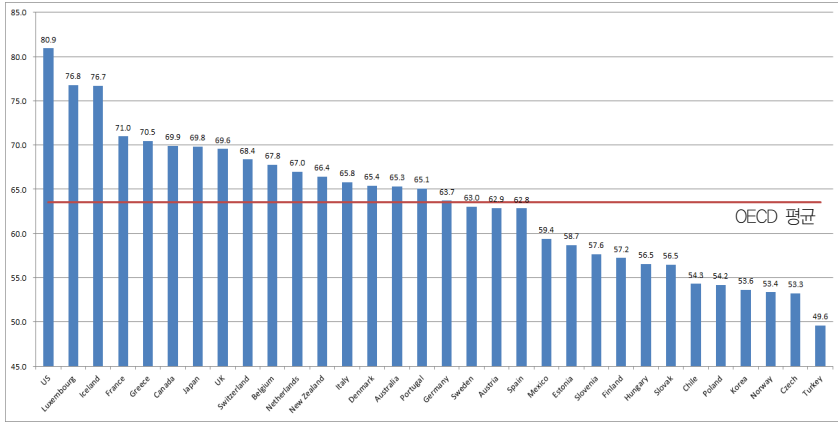
가.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 추이 비교

201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63.5%로 우리나라 53.6%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터키(49.6%), 체코(53.3%), 노르웨이(53.4%)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2010년 실질 GDP의 80.9%에 달한다. 이어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등이 75%를 초과하는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와 그리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70%를 소폭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 캐나다, 일본, 영국이 69% 수준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비롯하여 12개 국가들이 60%를 상회하는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4]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2010년)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각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표 II-2〉에 제시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OECD 평균 비중은 각각 59.7%와 61.3%이고 2000년대 OECD 평균 비중은 62.3%로 나타나며 서비스 산업이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평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이미 73.3%에 달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0년대 평균 74.3%를 보인 후 2000년대 평균 78.2%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미국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2010년 80.9%, 2011년 81.1%로 나타났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서비스 산업 비중은 63%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소폭 상회했다. 당시 우리 경제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만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했으나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보다 심화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1990년대부터 OECD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GDP 비중과 OECD 평균 비중 사이의 괴리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위상이 크게 약화됐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1980년대 평균 63%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58.4%와 54.7%로 축소된 반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대부분의 국가들 중에서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에스토니아는 1990년대 평균 60.6%의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였으나 2000년대 평균 59.3% 수준으로 소폭 축소된 이후 2013년 57.2% 수준으로 축소됐다. 폴란드는 1990년대 평균 57.7%의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이다가 2000년대 평균 56.6%로 소폭 축소됐으며 슬로바키아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1990년대 평균 59%에서 2000년대 평균 54.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와 노르웨이는 2010년 우리나라보다 낮은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이고는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며 경제의 서비스화를 제고하고 있다. 터키와 노르웨이의 2013년 서비스 산업 비중은 1980년대 평균 서비스 산업 비중 대비 각각 2.0%포인트와 3.7%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2013년 53% 수준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55.7%의 평균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이다가 2013년 53%로 2.7%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1990년대 평균 58.4%에서 2013년 53.5%로 4.9%포인트 축소되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위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2〉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 실질 GDP 기준

(단위: %)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1	2012	2013
Australia	60.9	62.8	64.8	65.3	65.4	65.1	65.0
Austria	59.7	60.7	61.9	62.9	62.3	62.1	61.7
Belgium	-	66.1	67.0	67.8	68.2	68.5	68.7
Canada	61.9	64.4	67.5	69.9	-	-	-
Chile	52.8	50.4	49.9	54.3	54.9	55.1	55.2
Czech, Rep.	-	55.7	54.1	53.3	52.6	52.9	53.0

〈표 II-2〉의 계속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1	2012	2013
Denmark	60.1	60.7	63.0	65.4	65.3	65.5	66.0
Estonia	-	60.6	59.3	58.7	56.6	56.7	57.2
Finland	57.4	59.2	56.9	57.2	57.5	58.6	58.8
France	67.1	68.8	69.6	71.0	71.2	71.6	71.9
Germany	-	59.8	63.3	63.7	63.4	63.8	64.0
Greece	-	-	68.4	70.5	71.7	71.6	71.9
Hungary	55.5	59.0	56.4	56.5	-	-	-
Iceland	-	73.0	74.8	76.7	76.8	76.5	-
Italy	61.8	62.7	64.4	65.8	66.0	66.5	67.1
Japan	-	69.0	70.4	69.8	70.4	71.3	-
Korea, Rep.	63.0	58.4	54.7	53.6	53.3	53.6	53.5
Luxembourg	-	72.8	74.5	76.8	77.1	76.3	76.3
Mexico	55.8	56.3	57.6	59.4	59.8	60.1	60.8
Netherlands	63.0	63.7	65.8	67.0	67.1	67.4	67.5
New Zealand	58.8	62.0	64.7	66.4	66.5	66.2	-
Norway	50.7	47.6	50.4	53.4	53.9	54.0	54.4
Poland	-	57.7	56.6	54.2	-	-	-
Portugal	-	59.8	62.4	65.1	65.5	66.5	66.9
Slovak, Rep.	-	59.0	54.6	56.5	-	-	-
Slovenia	52.1	55.2	55.7	57.6	-	-	-
Spain	-	58.0	59.2	62.8	63.8	64.8	65.3
Sweden	64.3	64.7	62.9	63.0	63.4	63.8	64.3
Switzerland	67.0	67.5	68.3	68.4	67.6	67.6	-
Turkey	47.5	47.1	49.5	49.6	49.3	49.5	49.5
U. K.	61.5	62.4	67.6	69.6	69.8	70.7	71.0
U. S.	73.3	74.3	78.2	80.9	81.1	-	-
단순평균	59.7	61.3	62.3	63.5	64.5	64.1	63.2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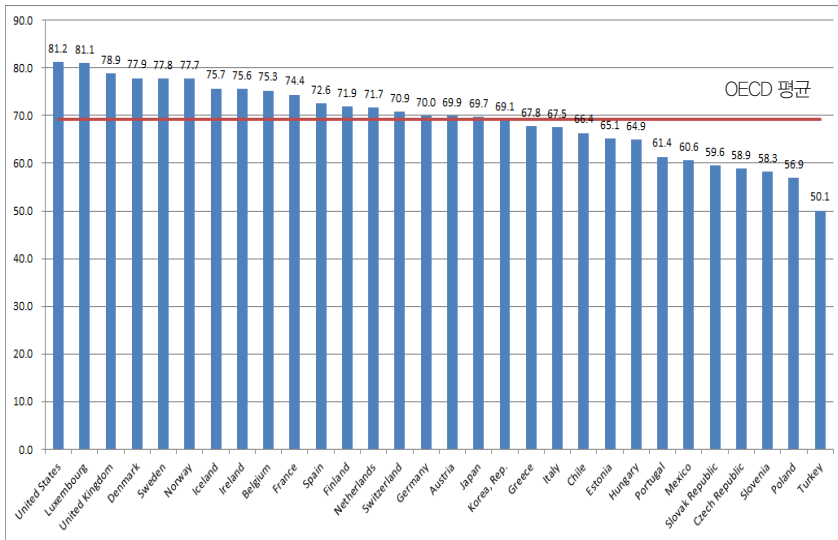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추이 비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2010년 6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비중인 69.5%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II-5]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81.2%), 룩셈부르크(81.1%), 영국(78.9%), 덴마크(77.9%), 스웨덴(77.8%), 노르웨이(77.7%)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총 15개 국가들이 70% 이상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69% 후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일본에 이어 18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비교: 2010년 기준

(단위: %)



- 자료: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2. 한국의 2010년 자료는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추이를 보다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표 II-3>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던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줄곧 OECD 평균보다 소폭 낮았으나 2010년 이후 69% 수준의 고용비중에 기인하여 2000년대에는 OECD 평균 수준과의 차이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평균 고용비중은 OECD 평균보다 13.4%포인트 낮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이 확대되며 OECD 평균과의 차이는 6.6%포인트로 축소됐다. 2000년대 OECD 평균 고용비중은 67.4%이고 동기간 우리나라 평균 비중은 65.8% 수준으로 1.6%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일부 국가들의 자료가 가용하지 않지만 가용 26개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69.9%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관측된다.

<표 II-3>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기간별 평균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은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를 달성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내수를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 경제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축소되는 가운데 고용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내수진작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에 틀림없다.

향후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대책들이 발표 및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어 전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이 OECD 평균에 근접하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취약함을 시사한다.

〈표 II-3〉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

(단위: %)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1	2012
Australia	66.7	72.2	75.0	-	-	-
Austria	53.5	60.6	67.0	69.9	68.7	68.9
Belgium	66.0	69.2	73.6	75.3	75.5	77.1
Canada	69.9	73.9	75.4	-	-	-
Chile	59.0	58.3	64.0	66.4	66.4	-
Czech, Rep.	-	52.6	56.6	58.9	58.6	58.8
Denmark	65.6	69.0	74.2	77.9	77.6	77.5
Estonia	42.3	54.1	61.6	65.1	62.9	64.1
Finland	57.7	65.2	69.5	71.9	72.4	72.7
France	61.8	67.9	72.3	74.4	74.6	74.9
Germany	55.5	60.6	67.4	70	70.1	70.2
Greece	44.6	56.2	64.8	67.8	69.8	70.3
Hungary	39.4	57.1	62.3	64.9	64.4	64.9
Iceland	63.9	66.0	72.2	75.7	75.7	75.8
Ireland	57.5	62.2	68.1	75.6	76.5	76.9
Israel	65.3	69.1	75.4	-	-	-
Italy	55.9	60.4	65.3	67.5	67.8	68.5
Japan	56.7	60.6	66.7	69.7	-	-
Korea, Rep.	43.5	55.2	65.8	69.1	69.5	69.9
Luxembourg	62.3	72.4	80.3	81.1	82.7	84.1
Mexico	48.4	53.5	59.0	60.6	61.9	-
Netherlands	67.3	69.9	72.6	71.7	71.5	-
New Zealand	63.2	66.2	70.0	-	-	-
Norway	66.5	71.8	75.4	77.7	77.3	77.4
Poland	34.1	45.6	53.7	56.9	56.7	57
Portugal	43.2	54.2	57.3	61.4	62.7	63.8
Slovak, Rep.	-	52.5	56.7	59.6	59.5	59.2

〈표 II-3〉의 계속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1	2012
Slovenia	-	47.9	54.4	58.3	59.5	60.3
Spain	51.1	60.5	66.1	72.6	74	74.9
Sweden	65.8	71.1	75.7	77.8	77.7	77.9
Switzerland	59.9	68.1	71.3	70.9	71.1	72.5
Turkey	43.5	35.0	46.2	50.1	49.4	50.4
U. K.	64.2	69.9	76.3	78.9	79	78.9
U. S.	69.1	73.1	78.0	81.2	-	-
단순평균	56.9	61.8	67.4	69.3	69.1	69.9

- 자료: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2. 한국의 2010년 이후 자료는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Ⅲ.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의 변화

2001년 이후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선정하고 여러 차례의 종합대책과 분야별 대책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일부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나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는 정체 또는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 기업들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종합대책과 함께 특정 세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문별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비중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관련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의 가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국내 서비스 수요가 해외에서 충족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수출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1년 이후 발표된 다양한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나 본 연구는 각 정부별로 조세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서비스 산업 대책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오랜 기간 농림어업 및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어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1년 이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서 살펴볼 산업별 조세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로 향후 조세제도 관련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과거 정부에서 수행한 조세정책을 정리하고 다음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과거 정부마다 수행한 세제정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일부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왔던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 국민의 정부

십여 년 전인 2001년부터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가 농림어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부각되며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의 정부는 2001년 이후 세 차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III-1>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2001년 10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이 발표됐다.³⁾ 이 지원방안은 각종 정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마련됐다. 이러한 논의는 2001년 9월 2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1년 10월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의 기준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로 포함되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3)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크고 작은 여러 대책들이 있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관련 보도자료는 2001년 하반기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1년 9월 26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안건인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및 중소기업범위 조정(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1. 9. 26)'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1년 10월 19일에 발표된 당정회의자료와 그 이후에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관련 조세정책들의 변화내역을 살펴본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 발표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과 2002년 말에 발표된 제2차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개별 서비스업종의 발전 방안을 담고 있다. 2001년 11월에 발표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에 포함된 조세지원방안은 같은 해 10월에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며 각 방안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정책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말에 발표된 제2차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환경서비스 산업, 해운산업, SI(System Integration)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언급은 해운산업과 SI 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해운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펀드 투자자의 분배소득 분리과세 등의 조세지원이 제시됐다. 그리고 일반기업이 SCM(supply chain management)와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등의 시스템 통합에 투자하는 금액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규정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I산업의 수요 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SI 기업의 사업용 자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취득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표 III-1〉 2001년 이후 국민의 정부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2001.10.19.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18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업종과 동일한 30개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수혜	조특법시행령 제2조제1항 2001.12.31. 개정 2002.1.1.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추가)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항 2001.9.29개정 2001.9.29시행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조특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2001.12.31. 신설 2002.1.1. 시행

〈표 III-1〉의 계속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 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창업 중소기업 납부세액 50% 감면 대상에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추가	조특법 제6조제1항 2001.12.29. 개정 2002.1.1.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중 공업디자인서비스업과 패션디자인업을 전문 디자인업으로 확대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항 2001.12.31. 개정 2002.1.1시행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	조특법 제32조제1항 2002.12.11개정 2003.1.1시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법 제7조제1항 2001.12.29 개정 2002.1.1시행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2001.11.3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2001.10.19.)과 동일	
제2차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2.12.13	기업의 SI투자(SCM, CRM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제24조제1항 2002.12.11.개정 2003.1.1.시행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개발용 H/W 및 S/W 취득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	국세청예규, 2001.11.28.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펀드 투자자 분배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차익 및 선박매매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	조특법 제91조의3 2002.12.11.신설 2003.1.1.시행

자료: 1.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2001. 10. 19.
 2. 산업자원부, 「비즈니스(사업)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2001. 11. 3.
 3. 환경부, 「환경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2002. 12. 13.
 4.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2. 12. 13.
 5. 정보통신부, 「SI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2. 12. 1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각 해당조문 참고.

2.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들 중에서 조세지원 정책의 주요 개편 내역들은 <표 III-2>에 정리되어 있다. 2004년 3월에 발표한 조세지원 정책 개편방안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지원 정책 방안들은 대체로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 체계에 의해 차별적으로 적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일부 업종들을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에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2004년에 발표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들은 보육시설, 광고업, 물류업, 경영상담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들 또는 종사자들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들이다.

2006년에 발표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요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도 일부 서비스업종들에 속하는 기업의 조세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가 주를 이룬다. 한편 영세한 문화공연단체들의 세부담이 크지 않고 문화예술 시장규모도 크지 않아 결손법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경감보다는 이들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문화서비스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일반법인이 지출한 소정의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외에 물류, 숙박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기도 했다.

2007년에 발표된 제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IT 투자를 하는 서비스업종 기업들에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 R&D 확대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던 R&D 세액공제 위탁대상에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의 연구개발 지원업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말에 발표된 제3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전문디자인업 등의 서비스 업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도권 중기업에 주어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정책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기업과 스포츠구단의 부동산에 대한 소정의 지방세 감면제도를 제시했다. 또한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로펌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무법인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 III-2〉 참여정부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2004.3.19	① 보육시설 및 ② 광고업을 조세 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① 시행 안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2005.12.31.개정 2006.1.1시행
		물류업/경영상담업/전문디자인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조특법시행령 제16조제1항 2004.6.5.개정 2004.6.5.시행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조특법시행령 제94조제1항 2004.6.5.개정 2004.6.5시행
		인문계 및 사회과학 분야 대학 훈련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조특법 제10조제1항 2006.12.30.개정 2007.1.1.시행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4.	문화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산입제도	조특법 제136조제3항 2007.6.1신설 2007.9.1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함께 문화·환경·통신서비스업 정책 대상자 범위 확대 ① 영화상영업, 분뇨처리업 정책대상자로 추가 ② 전기통신업종의 필수 자산인 무선중계용 철탑을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	①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항 2006.12.30.개정 2007.1.1시행 ② 조특법시행규칙 제14조 2007.3.30개정 2007.3.30시행

〈표 III-2〉의 계속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에 교육·의료서비스업 등 추가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2007.2.28. 개정 2007.2.28시행
		관광산업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액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시행 안 함(개정 안 함)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인적 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일부 서비스업(광고업, 디자인업)을 추가	조특법 제104조의11 1항 2007.6.1.개정 2007.6.1시행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2008.7.24.개정 2008.7.24시행
		물류, 숙박 시설 등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	시행 안 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하여 기존 SPC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① 배당가능이익의 90% 배당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을 법인소득에서 공제 ②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중과세적용 배제, 사업영위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취득세 각 50% 감면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 1항 2006.12.30.개정 2007.1.1시행 ② 시행 안 함(지방세법 제138조 개정 없었음)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장비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② 영화용 필름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① 조특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1] 2007.3.30.개정 2007.3.30.시행 ②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37류 2006.12.30.개정 2007.4.1시행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한 2008년말까지 2년간 연장	조특법 제118조제1항 2006.12.30.개정 2007.1.1시행

〈표 III-2〉의 계속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첨단 기술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12조의2 1항,2항 2006.12.30신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체육시설 포함	소득세법 제52조1항 2006.12.30개정 2007.1.1시행
제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7.7.30	IT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RFID/USN 시스템, 모바일터치 결재단말기, 지하매설물 관리 로봇 등 서비스기업의 로봇투자 등을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② 물류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제 지원,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중 전년대비 증가 물류비의 3% 법인세액 공제제도 도입 ③ RFID 활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주세 과세표준에서 RFID 태그비용 제외 R&D 투자확대 촉진	① 시행 안 함 ② 조특법 104조의14 1항 2007.12.31신설 2008.1.1시행 ③ 국세청 조사지침 개정, 주세법시행령 제21조3항 2008.2.22.개정 2008.4.1시행
		R&D 세액공제 위탁대상에 연구개발지원업(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포함	조특법시행령 제9조3항 2008.2.22개정 2008.2.22시행
제3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2007.12.10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도권 중기업에 주어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	조특법시행령 제6조6항 2008.2.22개정 2008.2.22시행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50%, 5년)	시행 안함
		창작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창작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진흥원내의 위탁훈련비를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조특법시행규칙 제7조11항 2008.4.29개정 2008.4.29시행

〈표 III-2〉의 계속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전체 면수 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자출판물 구성범위 제한 폐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008.4.22개정 2008.4.22.시행
		스포츠구단의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분류방식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 2007.12.31.개정 2008.1.1.시행
		국내로펌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제도 적용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19 2008.2.2.신설 2009.1.1시행

자료: 1. 재정경제부(관계부처합동),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2004. 3. 19.
 2. 재정경제부(관계부처합동),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6. 12. 14.
 3. 재정경제부(관계부처합동), 「제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7. 7. 30.
 4. 재정경제부(관계부처합동), 「제3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2007. 12. 10.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각 해당조문 참고.

3.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Service Progress I과 II를 각각 발표하고 2009년 1월에 Service Progress III을 발표했다. Service Progress I은 서비스 수지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관광·의료관광, 교육,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Service Progress II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진입 및 영업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바탕으로 Service Progress III은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위한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며 서비스 산업의 R&D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4월에 발표된 Service Progress I의 정책목표인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부담을 완화하는 일련의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유원지의 놀이시설의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같은 해 9월에 발표된 Service Progress II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있으나 고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계약학과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인수단으로 기업이 지불한 계약학과 관련 교육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식 산업의 지원을 위해 음식점업을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2009년 1월에 발표된 Service Progress III은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는 서비스 R&D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R&D 관련제도를 서비스 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2012년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며 정책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내 조세감면 대상으로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을 추가했다. 2012년 9월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 등에 비추어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정책 측면의 여러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서비스 산업의 육성방안 중 조세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세지원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서비스업종들이 제조업종들과 같은 수준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2011년 말에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2012년 5월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여 입법에 고려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산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정부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 이명박 정부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I	2008.4.25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완화를 위한 ① 개별소비세 감면 ② 종부세 원형보전지 별도합산특례 0.8%로 인하(기존 종합합산 1~4%) ③ 원형보전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 합산 0.2~0.4%(기존 종합합산 0.2~0.5%) ④ 개발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2%로 인하(기존 4%) 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로 인하(기존 10%)	① 조특법 제112조 2008.9.26신설 2008.10.1시행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 2008.6.25.개정 2008.7.1.시행(단,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방세법 제188조1항 2008.9.26.개정 2008.9.26.시행(단,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④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2008.9.26.개정 2008.9.26.시행(단,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2008.9.26.개정 2008.10.1시행
		유원지 놀이시설 관세 50% 경감	시행 안 함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II	2008.9.18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계약학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제104조의18 2008.12.26신설 (기존 조특법 제63조의3 2008.12.26 삭제)

〈표 III-3〉의 계속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외식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추가 ② 음식점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제매입세액공제 기간 2010년까지 연장	① 조특법 제6조2항 2008.12.26개정 2009.1.1시행 ②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9조1항 2009.3.26개정 2010.1.1시행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III	2009.1.14	R&D 관련 법령·제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마련	조특법 제10조제1항 2008.12.26개정 2009.1.1시행
2012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2.2.22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추가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항 2013.2.15개정 2013.2.15시행
		외투지역(개별형) 내 조세감면 대상에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을 추가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2013.2.15개정 2013.2.15시행
서비스 산업 차별 완화 방안	2012.9.7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정책대상자로 추가	제도정비 미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시장조사/여론조사업, 전시/행사대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9개 (2012년 세법개정사항)와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추가 추진	조특법시행령 제23조1항 2013.2.15.개정 2013.2.15.시행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조특법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별표6] 2013.2.15.개정 2013.2.15.시행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내 조세감면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추가(2012 세법 개정안)	조특법시행령 제116조2 2013.2.15.개정 2013.2.15.시행

〈표 III-3〉의 계속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대상에 기존 7개 서비스업종에 한해 인정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의료업(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수적인 의료코디네이터에 한함) 등 특정 경력 및 학위소지분야 대상 확대	조특법시행령 제16조1항 2013.2.15.개정 2013.2.15.시행

- 자료: 1.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 2008. 4. 25.
 2.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I-」, 2008. 9. 18.
 3.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II-」, 2009. 1. 14.
 4.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2012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2. 2. 22.
 5.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서비스 산업 차별 완화방안」, 2012. 9. 7.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각 해당조문 참고.

4. 박근혜 정부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과거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핵심적 성장동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 경제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요인들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 산업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업종별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추진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제정은 박근혜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지원 제도들 중 모든 제조업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보다 많은 서비스업종에 주고자 2013년 7월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의 정책대상자에 연구개발서비스업,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업, 광고업,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유망 서비스업종들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표 III-4〉 박근혜 정부 서비스업 조세지원 정책

정부대책	발표일	주요 세제개편 내용	법 개정 및 시행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2013. 7. 4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조특법 제7조1항 2014.1.1.개정 2014.7.1시행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 확대	조특법시행령 제23조1항 2014.2.21.개정 2014.2.21시행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자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조특법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별표6] 2014.2.21.개정 2014.2.21시행
		중소기업 기술매각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추진	조특법 제12조1항 2014.1.1.개정 2014.1.1시행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대상 포함	201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관련 [별표 1] 2013.12.24. 개정 2014.1.1. 시행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2013. 7. 10	중소기업의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 확대 적용	조특법 제2조제1항 2014.2.21. 개정 2014.2.21. 시행

자료: 1.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2013. 7. 4.

2. 보건복지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2013. 7. 10.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각 해당조문 참고.

Ⅳ. 산업별 조세격차와 경제성장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에 의해 나타나는 산업별 실효세율의 차이는 동일한 소득규모에 대해 세부담을 달리 부과한 결과이다. 이는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인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면서 산업별로 다른 세부담을 부과하는 조세정책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가경제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다.

산업별 차별적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실증분석의 문제이다. 먼저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는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훼손한다. 경제의 효율성 훼손은 성장을 저해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조세제도의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산업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다른 산업들로 파급되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으며 긍정적 외부효과가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초래된 효율성 왜곡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클 때 산업별로 차별적인 조세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⁴⁾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로부터 긍정적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산업과 최적 수준의 세율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선택한 산업과 세율수준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어떤 산업의 수익성이 좋고 나쁨은 공공부문보다

4)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자원배분 왜곡에 따른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고 해서 훼손된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정당성까지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산업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경제 총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경제주체들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정책입안자들이 유념해야 할 또 다른 문제이다.

는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이 보다 더 잘 알고 있으므로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법인세 체계가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은 김학수(2013)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효세율의 차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인세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1.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 측정방법 및 사용자료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를 2000년 이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국세통계연보의 산업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의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와 비교하고자 한다.⁵⁾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는 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연도별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연도별 변이계수는 각 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각 국가의 전체 평균 실효세율로 정규화해 주고 있어서 국가별 비교도 가능하다.

통상적인 변이계수는 평균값에 비해 표준편차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데,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는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CV_n = 100 * \frac{\sqrt{(n-1)^{-1} \sum_{i=1}^n (ETR_i - ETR)^2}}{ETR} \quad (1)$$

단, ETR_i 는 개별 i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을 나타내고 ETR 은 전산업 평균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이 경우 개별 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상관없이 변이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서 특정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전체 평균 실효세율로부터 급격하게 멀어지면 변이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

5)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은 김학수(2013)에서처럼 해당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의 과세표준 합계 대비 법인세 총부담세액으로 측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학수(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준편차를 구할 때 해당 산업의 세수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구하고 CV_w 를 측정하고자 한다.

$$CV_w = 100 * \frac{\sqrt{\sum_{i=1}^n w_i (ETR_i - ETR)^2}}{ETR} \quad (2)$$

단, w_i 는 i -산업의 세수비중을 나타내고 ETR_i 와 ETR 은 앞에서와 같이 각각 개별 i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과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다음 절들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변이계수를 구하고 자료가 가용한 10개 주요 국가들에 대한 변이계수를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2절에서 산업분류를 크게 4개의 산업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변이계수(CV_{w1})와 우리나라 국세통계연보에 발표된 13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변이계수(CV_{w2})를 식 (2)와 같이 측정하여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변이계수 측정시 사용한 산업 구분은 아래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변이계수 유형별 산업 구분

CV_{w1} 측정시 사용한 산업 구분	CV_{w2} 측정시 사용한 산업 구분
1차 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
여타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3절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의 변이계수 추이를 주요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덴마크,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으로 구성된 10개 국가이다. 각 비교대상 국가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홈페이지나 국내 도서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국가의 국세청, 통계청, 재무부 등에 자료협조를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산업별 법인세 자료를 구축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해당 국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일본의 경우 국내 도서관에 소장된 일본의 국세청통계연보서를 이용했다. 독일, 덴마크,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국세청 또는 재무부 담당자와의 전자우편 교환을 통해 전자책자 또는 엑셀자료를 협조받았다.⁶⁾ 협조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11개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4개 대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CV_{w1} 을 측정하고 우리나라의 추이와 비교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13개 산업구분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덴마크, 호주, 독일, 헝가리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우 일부 연도 또는 2000~2010년 전체에 대해 일부 산업에 대한 법인세 정보가 구분되지 않고 다른 산업에 합산되어 협조되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2002년까지의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고 2003~2007년까지 음식숙박업과 보건업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다가 2008년 이후 구분되어 제공되었다. 스페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광업, 음식숙박업, 보건업, 기타 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정보가 일부 연도 또는 전체 연도에 대해 제공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별로 제공된 산업구분이 다양하여 우리나라의 13개 산업구분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분류하여 변이계수를 측정했다.⁷⁾ 따라서 각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9~13개 산업을 기준으로 변이계수를 측정했다. 13개 산업구분을 활용하여 CV_{w2} 를 측정한 국가들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덴

6)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제외한 29개 OECD 국가들의 재무부, 통계청, 국세청 등의 관계자들에게 본 연구에 필요한 산업별 법인세 부담 자료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미 있는 회신을 받은 국가는 상기 6개 국가들이다. 자료 협조를 통해 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각 국가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

7) 각 국가별 산업구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표 I-1〉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크, 독일, 헝가리 5개국이며, 12개 산업구분을 활용하여 CV_{w2} 를 측정
한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3개국이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11개 산
업구분을 기준으로 CV_{w2} 를 측정했고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은 각각 11개,
10개, 9개 산업구분을 기준으로 CV_{w2} 를 측정했다.

2. 우리나라의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과 변이계수 추이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1차 산업과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전 산업
평균을 하회하고 금융보험업과 여타 서비스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전 산업
평균을 줄곧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4개 대분류를 기준
한 경우와 13개 산업분류를 기준한 경우에 모두 관측된다.⁸⁾ 2000년 이후 법
정 최고세율 인하 추이와 함께 각 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하락 추
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1차 산업 평균 실효세율의 하락 추이가 매우 크게 나
타났다. 금융보험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추세적 하락 추이 속에서도 여타 산
업들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높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에 나타나 있는 1차 산업 평균 실효세율의 급격한 하락 추이는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을 하회하는 농림어업의 평균 실효세율 추이와 함께
2005년 이후 광업의 평균 실효세율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광업 평균 실효세율은 2004년 20.7%에서 2005년 13.1%로 하락한 이후 추세
적으로 매우 빠르게 하락하여 2010년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에 나타나 있는 4개 대분류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
인 CV_{w1} 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가 결산연도
2002년 10.2%를 저점으로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16.7%를 기록한 후
다소 주춤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3개 산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인 CV_{w2} 도 CV_{w1} 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2002년 이후 우리나라
의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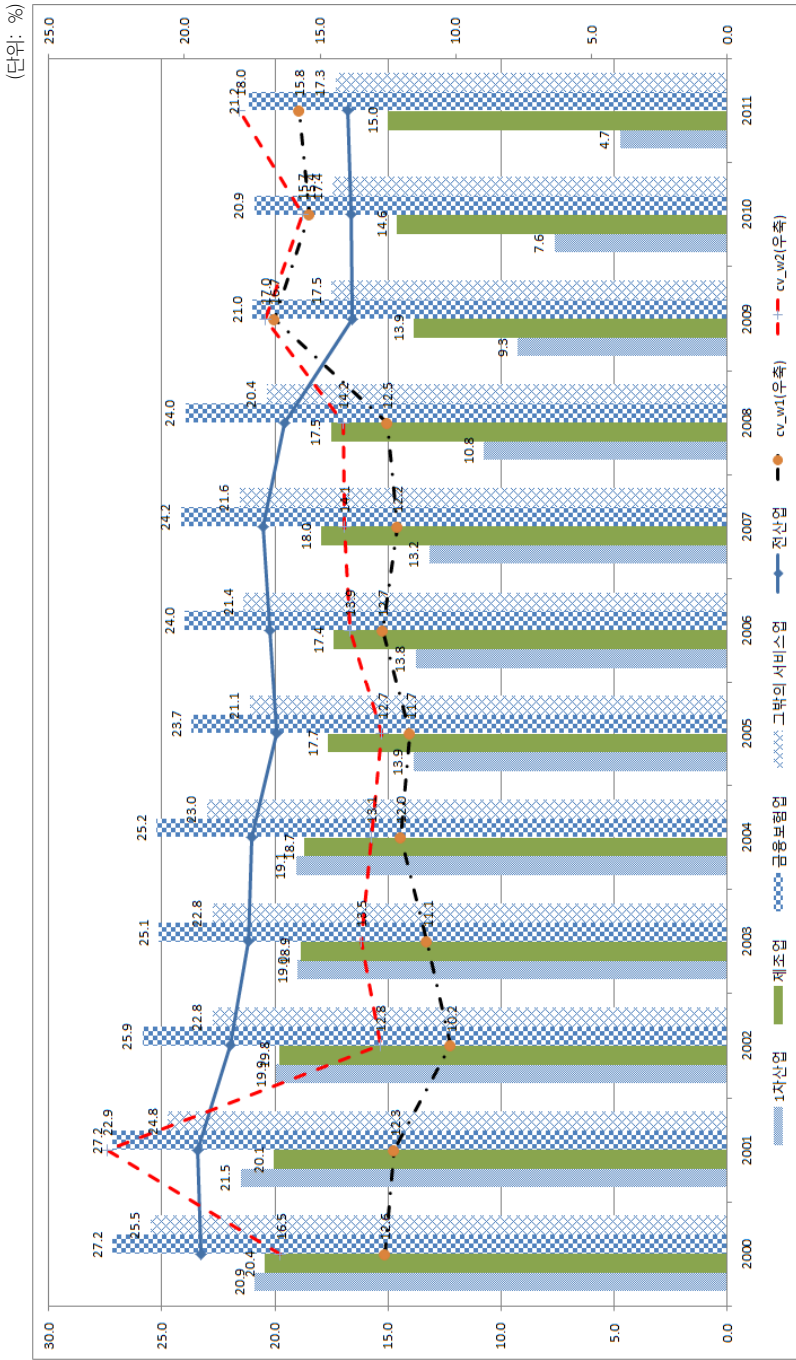
8) 4개 대분류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과 13개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은 〈표 IV-2〉에서 보다
자세히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다.

9) 본 보고서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산업별 과세대상 소득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경우도

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가 최근 들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1차 산업 및 제조업에 보다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3차 산업에 속하는 산업군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혜적 조세체계가 2000년 이후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차 산업과 제조업은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3차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는 오래된 법인세 정책방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혜적 조세체계의 혜택을 누리는 이 산업들로부터 유발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조세왜곡에 따른 경제 효율성 훼손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커야만 한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1차 산업이나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매우 유사한 양상의 조세격차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IV-1] 주요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과 조세격차 추이: 한국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한국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전 산업	1차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CV_w1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산업	서비스 업	보건업	기타	CV_w2
2000	23.3	20.9	20.4	27.2	25.5	12.6	18.9	21.4	20.4	27.6	25.4	24.1	28.5	24.4	27.2	40.3	24.9	25.4	22.7	16.5
2001	23.4	21.5	20.1	27.2	24.8	12.3	19.2	22.2	20.1	27.7	22.4	23.8	25.9	21.4	27.2	25.8	24.5	23.3	53.0	22.9
2002	22.0	19.9	19.8	25.9	22.8	10.2	19.3	20.2	19.8	26.8	21.2	22.7	25.0	19.0	25.9	26.0	23.2	23.6	21.2	12.8
2003	21.2	19.0	18.9	25.1	22.8	11.1	15.9	20.1	18.9	26.7	21.6	22.1	24.2	20.3	25.1	25.9	23.0	24.0	19.8	13.5
2004	21.0	19.1	18.7	25.2	23.0	12.0	18.1	20.7	18.7	26.5	22.7	22.1	24.2	21.5	25.2	26.1	21.3	20.8	21.0	13.1
2005	19.9	13.9	17.7	23.7	21.1	11.7	15.2	13.4	17.7	24.3	21.2	20.6	22.8	18.9	23.7	24.0	20.3	17.5	18.5	12.7
2006	20.2	13.8	17.4	24.0	21.4	12.7	15.1	13.1	17.4	24.3	21.6	21.1	23.1	18.7	24.0	24.5	20.3	17.8	20.1	13.9
2007	20.5	13.2	18.0	24.2	21.6	12.2	16.3	11.8	18.0	23.8	22.0	21.1	23.5	17.3	24.2	27.5	20.4	19.0	21.4	14.1
2008	19.6	10.8	17.5	24.0	20.4	12.5	18.0	5.3	17.5	23.9	19.8	19.7	21.8	18.4	24.0	25.7	19.7	18.3	22.1	14.2
2009	16.6	9.3	13.9	21.0	17.5	16.7	14.4	4.9	13.9	17.0	17.2	17.1	19.2	18.2	21.0	20.8	17.2	16.4	24.4	17.0
2010	16.6	7.6	14.6	20.9	17.4	15.4	14.7	3.1	14.6	18.6	16.9	17.7	19.5	17.6	20.9	19.6	16.7	16.9	21.0	15.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가. 4개 대분류 산업 기준 조세격차 추이 비교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4개 대분류 기준 2010년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이 미국, 헝가리, 호주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보다 높으면서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2000년 이후 조세격차 확대 추이 유형, 조세격차 축소 추이 유형, 큰 변동이 없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세격차 확대 추이 유형

[그림 IV-2]에 나타나 있는 11개 국가들의 조세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처럼 추세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로는 미국, 덴마크, 독일, 영국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을 정점으로 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변이계수로 추정된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28.7%로 17%를 소폭 하회하는 우리나라 조세격차 수준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의 경우 1차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제조업이 가장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6%이고 미국 1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방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35% 수준이고 지방세분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이 39.1%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제조업이 부담하고 있는 15% 수준의 제조업 평균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¹⁰⁾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에는 연도별 등락 속에 추세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

10) 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 수준의 변화와 세율체계는 <부록 II>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변이계수의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경우 국제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조세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2010년 기준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는 6.7%로 우리나라보다 8.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1차 산업 평균 실효세율은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의 산업별 변이계수는 2007년 6.2%로 크게 높아진 후 2009년 4.5%로 하락하며 조세격차 수준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¹⁾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차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표 IV-8>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광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진 데 기인한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경우 전체 평균 실효세율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은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2010년 평균 실효세율이 전체 평균 실효세율인 16.6%보다 9%포인트나 낮게 나타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독일의 경우 광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전체 평균 실효세율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영국은 2008년 13.2%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을 보인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6.4%와 6.1%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산업별 조세격차 측정이 가능한 최초 연도인 2004년 5.1% 수준의 산업별 조세격차를 보인 이후 2008년을 정점으로 축소되는 역U자 형태의 추이와 유사하지만 2010년의 조세격차 수준이 2000년대 초반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9년 이후 제조업 분야의 평균 실효세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8년 14.7% 수준으로 낮아진 제조업 분야의 평균 실효세율은 2009년 18.3%와 2010년 23.7% 수준으로 확대되며 제조업의 법인

11) 독일의 경우 정확히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국가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2000년대 초반 매우 낮았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에 비해 2007년 이후의 조세격차 수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세격차 확대 추이 국가로 분류한다. 독일의 산업별 조세격차 추이는 다음 소절에서 설명할 조세격차 축소 추이 유형 중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급격히 축소되는 역 U자 형태와도 흡사하나 마지막 연도의 조세격차 수준이 2000년대 초반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1차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제조업 분야의 평균 실효세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금융보험업의 실효세율은 전산업 평균 실효세율을 소폭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세격차 축소 추이 유형

연도별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조세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로는 호주, 캐나다, 헝가리, 일본, 스페인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반의 조세격차를 정점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호주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은 2002년 44.1%에서 2003년 17.6%로 급격히 축소된 이후 추세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나 2008년 9.0%에서 2010년 18.2%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금융보험업의 평균 실효세율 변화 추이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2003년 이후 평균 실효세율이 25% 안팎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보험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을 하회하고 여타 업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산업별 조세격차를 측정하는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는 2000년 12.1%에서 2010년 7.9%로 하락하여 산업간 법인세 부담의 차이가 축소되며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1차 산업과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평균 실효세율을 보이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2000년 8.2%에서 2010년 5.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1차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광업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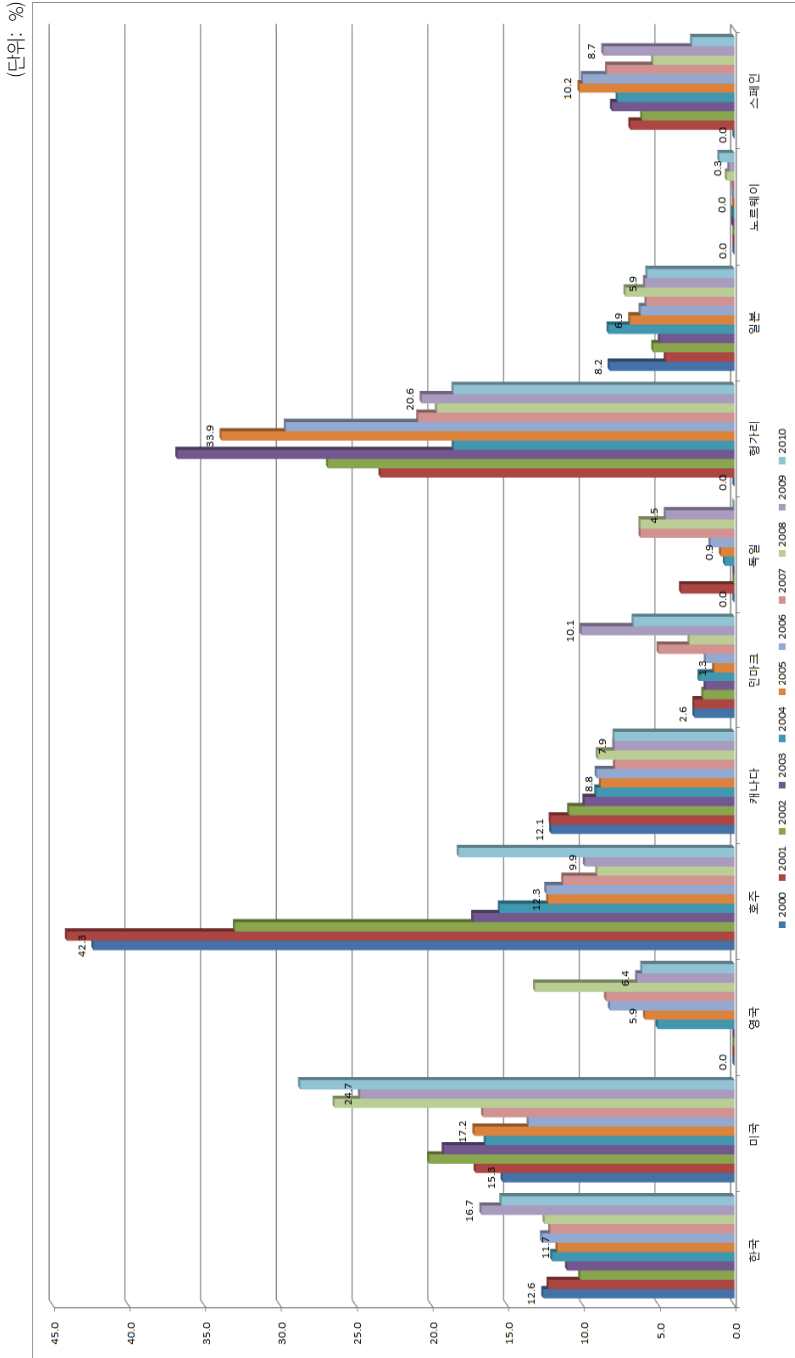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1차 산업들 중에서 농림어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금융보험업도 우리나라와 달리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 수준의 법인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추세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로는 헝가리, 스페인, 영국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조세격차 추이는 2000년대 중후반의 정점 이후 하락하는 역 U자 형태의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헝가리는 2003년 36.8%와 2005년 33.9%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을 보인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18.5% 수준으로 하락했다. 스페인은 2005년 10.2%를 정점으로 추세적 하락 속에 2010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큰 변동이 없는 유형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에 큰 변동이 없는 국가로는 노르웨이가 있다. 노르웨이는 추세적으로 소폭 확대되는 조세격차 추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수준이 1%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법인세율 체계는 28%의 단일세율 체계이며 지방세분 법인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28%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세부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산업별 조세격차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 노르웨이 국세청 담당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보냈으나 5월 이후 답변이 없어서 이처럼 낮은 수준의 산업별 조세격차 측정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초 요청한 자료는 산업별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합계와 공제감면 이후 총부담세액이었으나 총부담세액 대신 산출세액을 제공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법인들에 주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매우 적어서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IV-2] 4개 대분류 산업 기준 조세격차(CV_wt) 추이 비교



자료: <표 IV-2>~<표 IV-1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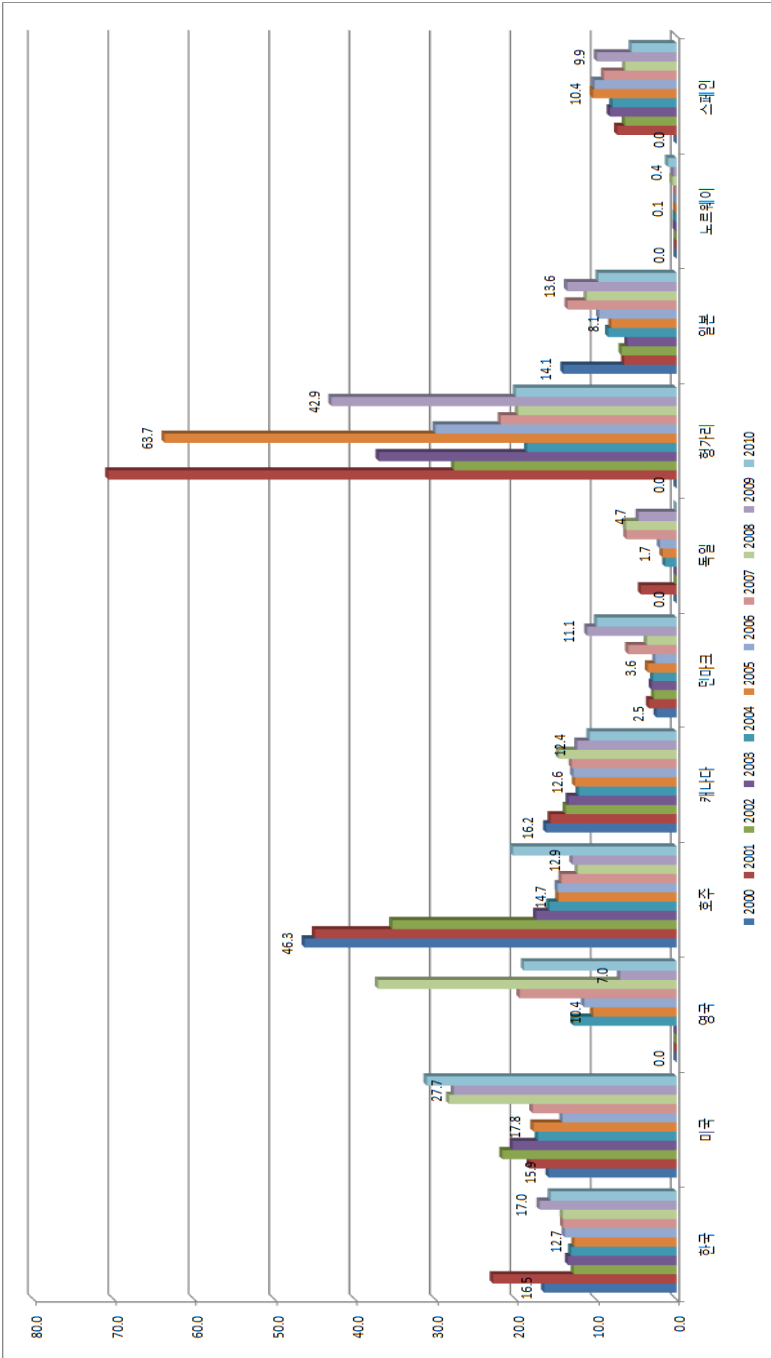
나. 13개 산업 기준 조세격차 추이 비교

[그림 IV-3]에 제시되어 있는 13개 산업 기준 산업별 조세격차의 11개 국가별 추이는 4개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측정된 [그림 IV-2]의 추이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세격차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의 구성도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산업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의 크기가 4개 산업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더 커졌다는 점만이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 크기는 4개 산업 대분류의 경우 11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2010년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는 19%로 우리나라의 15.7%보다 높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 순위가 11개 국가들 중 5위로 나타났다. 13개 산업 기준 2010년 가장 조세격차가 심한 국가는 미국, 호주, 헝가리, 영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13개 산업 기준 조세격차(CV_{it2})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표 IV-2>~<표 IV-1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3〉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미국

(단위: %)

시점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기타	CV_w2			
	전 산업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기타	CV_w1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2000	26.8	23.6	21.5	30.1	30.3	30.3	15.3	27.5	22.7	21.5	31.5	30.9	32.0	26.5	30.6	30.1	30.4	28.6	32.0	-	15.9
2001	26.2	24.5	19.9	31.3	29.1	29.1	17.1	24.0	24.6	19.9	29.7	31.2	31.8	25.0	26.3	31.3	29.8	28.2	33.2	-	18.3
2002	25.6	19.4	17.7	30.7	29.0	29.0	20.2	26.8	17.5	17.7	29.0	31.6	31.6	23.2	24.5	30.7	30.1	28.7	32.0	-	21.7
2003	25.4	21.7	18.2	29.9	28.9	28.9	19.2	27.3	20.4	18.2	27.3	31.8	31.2	23.0	26.5	29.9	30.9	27.7	33.2	-	20.4
2004	26.2	25.5	19.9	29.5	29.6	29.6	16.4	29.5	24.7	19.9	30.7	32.4	30.8	23.0	28.8	29.5	31.4	28.4	33.5	-	17.3
2005	26.0	24.4	20.1	29.3	29.9	29.9	17.2	29.3	24.0	20.1	29.2	32.5	31.2	25.7	30.0	29.3	32.0	28.6	33.2	-	17.8
2006	27.3	24.3	22.3	30.4	30.4	30.4	13.6	28.8	24.1	22.3	29.7	32.1	31.1	26.1	31.3	30.4	33.6	28.9	32.7	-	14.2
2007	26.5	21.3	21.0	30.7	30.1	30.1	16.6	28.7	20.8	21.0	30.4	31.1	32.6	24.1	29.7	30.7	33.8	27.7	32.1	-	17.9
2008	23.4	20.8	16.9	31.5	28.7	28.7	26.4	27.5	20.5	16.9	32.4	30.3	31.4	18.2	27.2	31.5	32.0	26.6	33.3	-	28.3
2009	22.9	16.9	16.8	30.2	27.3	27.3	24.7	28.1	15.9	16.8	32.0	29.7	30.1	16.8	27.4	30.2	29.0	22.8	32.9	-	27.7
2010	21.8	16.0	15.0	29.9	26.8	26.8	28.7	28.0	15.2	15.0	28.6	29.9	29.6	15.9	25.8	29.9	29.8	24.2	33.3	-	31.1

자료: 미국 IRS, Statistics of Income,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4〉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영국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전 산업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CV_w1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CV_w2	
2000	20.4	-	-	-	-	-	-	-	-	-	-	-	-	-	-	-	-	-	-	-	-
2001	21.1	-	-	-	-	-	-	-	-	-	-	-	-	-	-	-	-	-	-	-	-
2002	22.6	-	-	-	-	-	-	-	-	-	-	-	-	-	-	-	-	-	-	-	-
2003	18.1	-	-	-	-	-	-	-	-	-	-	-	-	-	-	-	-	-	-	-	-
2004	20.2	22.5	17.7	21.0	20.5	5.1	22.5	-	17.7	17.2	25.4	-	22.2	27.1	21.0	-	20.5	-	10.7	12.8	
2005	20.6	23.0	17.6	22.0	20.6	5.9	23.0	-	17.6	19.1	25.7	-	23.8	22.6	22.0	-	21.0	-	8.5	10.4	
2006	19.7	23.7	15.7	21.5	19.8	8.2	23.7	-	15.7	18.6	23.7	-	24.4	24.7	21.5	-	19.7	-	13.7	11.5	
2007	21.1	23.5	16.2	21.5	22.1	8.5	23.5	-	16.2	29.8	23.6	-	25.8	25.5	21.5	-	20.6	-	10.2	19.5	
2008	19.8	24.2	14.7	17.3	21.8	13.2	24.2	-	14.7	32.8	22.2	-	25.6	23.9	17.3	-	17.2	-	16.5	37.1	
2009	21.0	24.6	18.3	19.9	22.0	6.4	24.6	-	18.3	22.2	22.7	-	23.3	24.2	19.9	-	21.8	-	19.9	7.0	
2010	25.1	24.8	23.7	22.4	26.2	6.1	24.8	-	23.7	34.8	23.4	-	25.1	25.3	22.4	-	23.6	-	22.3	19.0	

자료: '영국 통계청 합조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5〉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호주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CV_w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간접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CV_w2	
2000	17.9	26.7	23.1	12.0	27.2	42.3	30.0	26.0	23.1	21.0	31.1	29.5	31.4	28.6	12.0	28.3	28.1	28.6	14.8	46.3
2001	18.0	27.1	26.0	11.7	27.0	44.1	27.4	27.1	26.0	18.6	28.2	27.8	27.5	29.1	11.7	26.1	24.1	28.0	17.7	45.0
2002	20.0	26.9	26.0	13.7	27.0	33.0	25.5	27.0	26.0	8.7	28.9	28.6	28.6	28.7	13.7	26.3	26.9	28.2	27.8	35.4
2003	24.4	27.9	28.5	19.7	28.3	17.2	28.2	27.8	28.5	29.5	28.7	28.8	29.3	29.2	19.7	27.1	26.4	27.6	27.4	17.5
2004	24.8	27.9	28.6	20.6	28.5	15.5	27.5	28.0	28.6	29.8	29.1	29.1	29.1	29.3	20.6	27.5	25.6	29.2	24.8	15.8
2005	24.5	27.9	28.6	21.4	26.8	12.3	25.3	28.2	28.6	27.8	28.3	28.6	25.5	28.9	21.4	24.7	27.8	28.4	17.6	14.7
2006	24.5	28.2	28.8	21.4	26.6	12.4	25.4	28.4	28.8	28.2	28.3	28.7	26.1	28.9	21.4	24.5	27.5	28.8	17.7	14.8
2007	24.6	27.7	28.4	21.5	26.6	11.3	26.1	27.8	28.4	26.1	28.4	28.7	27.2	28.6	21.5	22.8	28.2	28.8	18.1	14.3
2008	25.5	28.5	27.1	22.3	26.1	9.0	23.8	28.6	27.1	28.1	28.1	28.5	28.6	25.8	22.3	23.6	27.5	28.7	17.1	12.3
2009	25.1	28.4	27.5	21.8	26.4	9.9	25.8	28.5	27.5	29.1	28.4	28.7	28.7	25.8	21.8	24.3	27.2	29.0	18.6	12.9
2010	23.7	27.9	27.1	17.6	26.6	18.2	26.0	28.0	27.1	28.9	28.0	28.7	28.3	26.1	17.6	24.6	28.3	29.0	18.4	20.4

자료: 호주 Tax Office, Taxation Statistics,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차 작성

〈표 IV-6〉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캐나다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기타	CV_w2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기타	CV_w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서비스업			보건업
2000	22.1	21.7	19.3	26.7	22.6	12.1	20.5	29.1	19.3	29.8	20.0	22.8	20.0	28.1	26.7	26.3	20.7	14.1	-	16.2
2001	22.3	22.4	20.8	28.0	21.6	12.1	21.6	28.9	20.8	37.7	19.1	23.0	19.6	22.3	28.0	27.7	19.7	15.8	-	15.7
2002	22.0	21.8	20.9	27.2	21.0	10.9	21.4	24.6	20.9	28.2	18.6	21.7	19.3	23.1	27.2	26.1	18.9	15.8	-	13.8
2003	21.6	20.4	20.5	24.8	20.2	9.9	19.8	25.8	20.5	28.1	18.4	20.7	21.0	21.8	24.8	26.7	17.4	15.4	-	13.4
2004	20.4	23.7	19.6	22.8	19.0	9.1	23.4	25.5	19.6	22.7	18.0	20.0	18.2	17.7	22.8	26.1	17.3	14.7	-	12.2
2005	20.4	22.4	19.9	23.2	18.9	8.8	21.8	27.1	19.9	21.2	18.0	19.4	18.1	20.7	23.2	26.0	16.7	14.4	-	12.6
2006	20.6	24.2	20.0	22.7	19.2	9.1	23.8	26.7	20.0	21.3	18.2	19.6	18.7	21.6	22.7	26.5	16.8	15.0	-	12.9
2007	19.9	21.7	19.4	22.6	18.8	7.9	21.3	23.5	19.4	22.9	17.9	19.6	18.3	19.0	22.6	26.3	16.6	15.1	-	13.0
2008	17.6	17.5	17.0	21.1	16.8	9.0	17.7	16.8	17.0	17.1	16.3	17.3	16.3	17.3	21.1	24.5	15.0	13.0	-	14.6
2009	16.3	17.7	16.2	18.2	15.2	7.9	17.7	17.7	16.2	15.3	15.4	16.3	14.9	14.0	18.2	21.2	13.5	12.0	-	12.4
2010	15.6	15.8	15.3	17.6	14.7	7.9	15.7	16.1	15.3	14.7	15.0	15.8	14.9	13.5	17.6	18.2	13.2	12.0	-	10.8

자료: 캐나다 통계청, *Financial and Taxation Statistics for Enterprises*,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7〉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덴마크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기타	CV_w2		
	전 산업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CV_w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2000	31.8	32.0	31.1	30.8	32.7	2.6	31.9	32.0	31.1	32.0	32.8	32.0	33.5	32.2	30.8	32.4	33.2	32.4	36.2	2.5
2001	29.6	30.0	28.2	29.2	30.3	2.6	30.0	30.0	28.2	30.0	30.5	30.1	31.3	30.1	29.2	30.3	31.0	30.4	30.6	3.4
2002	29.7	30.0	28.6	29.3	30.2	2.1	30.0	30.0	28.6	30.2	30.3	29.9	31.2	29.9	29.3	30.3	31.3	30.3	30.4	2.8
2003	29.2	30.0	28.4	28.7	29.5	1.9	30.2	30.0	28.4	30.0	29.9	29.5	30.3	29.5	28.7	30.0	28.7	30.1	29.9	3.1
2004	29.1	30.0	29.0	28.2	29.6	2.3	29.9	30.0	29.0	30.0	29.9	29.7	30.2	28.9	28.2	29.9	29.6	30.0	29.9	2.9
2005	27.5	28.0	26.8	27.8	27.4	1.3	27.7	28.0	26.8	20.6	27.6	27.9	27.9	27.5	27.8	27.9	27.6	28.1	28.0	3.6
2006	27.5	28.0	26.2	27.7	27.7	1.9	27.5	28.0	26.2	27.9	27.3	27.9	27.8	27.3	27.7	27.9	27.8	28.0	27.9	2.6
2007	23.7	24.9	22.4	22.3	24.7	5.0	24.5	25.0	22.5	25.0	24.6	24.8	24.8	24.8	22.3	24.9	24.2	25.0	24.9	6.0
2008	24.0	24.8	23.6	22.3	24.2	3.0	24.5	24.9	23.6	23.4	24.6	23.9	24.7	24.7	22.3	24.5	24.3	25.0	23.6	3.7
2009	22.7	24.8	22.6	18.4	24.3	10.1	24.2	24.8	22.6	25.0	24.4	24.6	24.9	24.8	18.4	24.1	23.5	25.0	22.7	11.1
2010	22.9	24.8	23.2	20.1	23.7	6.7	24.1	24.9	23.2	12.1	24.0	23.5	25.1	25.3	20.1	24.9	23.1	24.9	25.4	9.9

자료: 덴마크 재무부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8〉 산업별 평균 실용세율 및 변이계수: 독일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기타	CV_w2										
	전 산업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기타	CV_w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2001	26.9	35.0	26.4	25.9	27.3	3.5	28.4	38.0	26.4	28.5	25.4	26.7	25.7	25.8	25.9	27.7	27.4	26.7	-	-	-	-	-	-	4.4		
2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3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	24.5	25.0	24.7	24.2	24.5	0.6	24.9	25.0	24.7	24.9	25.0	25.0	24.9	24.9	24.2	24.1	24.9	25.0	25.0	-	-	-	-	-	-	1.4	
2005	24.4	25.0	24.6	24.0	24.5	0.9	25.1	25.0	24.6	25.0	24.9	25.0	25.1	25.2	24.0	24.0	25.0	25.1	24.8	24.8	-	-	-	-	-	1.7	
2006	24.1	24.9	24.4	23.2	24.2	1.6	24.8	24.9	24.4	24.4	24.8	24.8	25.0	24.4	23.2	23.9	24.8	25.0	25.0	24.9	24.9	-	-	-	-	2.1	
2007	24.0	10.7	24.5	24.0	24.4	6.2	24.9	8.9	24.5	24.9	24.9	24.9	25.0	24.8	24.0	24.0	24.9	25.0	25.0	24.7	24.7	-	-	-	-	6.2	
2008	14.5	7.3	14.7	14.4	14.7	6.2	15.0	6.2	14.7	15.0	14.9	15.0	15.0	14.8	14.4	14.5	14.9	15.0	14.0	14.0	14.0	-	-	-	-	6.3	
2009	14.6	7.5	14.8	14.7	14.8	4.5	15.0	5.9	14.8	15.0	14.9	15.0	15.0	14.8	14.7	15.4	14.3	15.0	15.0	15.0	15.0	-	-	-	-	4.7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Finanzen und Steuern. Jährliche Körperschaftsteuerstatistik.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9〉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헝가리

(단위: %)

시점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전 산업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CV_w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CV_w2	
2000	-	-	-	-	-	-	-	-	-	-	-	-	-	-	-	-	-	-	-	-	-
2001	13.8	14.9	9.4	18.0	16.1	23.4	14.7	15.5	-	14.8	17.8	-	17.2	10.5	18.0	17.7	16.7	-	-	70.7	
2002	14.1	14.2	8.6	18.0	17.0	26.8	13.5	16.4	8.6	15.4	17.8	17.5	17.1	15.3	18.0	17.7	17.1	12.8	-	27.7	
2003	13.0	17.1	7.3	17.9	17.3	36.8	17.0	17.3	7.3	17.5	17.6	17.7	17.6	16.2	17.9	17.6	16.6	14.6	-	37.1	
2004	13.8	15.6	9.8	15.9	15.7	18.5	15.5	15.8	9.8	16.0	15.6	15.8	15.6	15.8	15.9	15.7	15.0	14.1	-	18.6	
2005	12.0	15.7	6.1	15.6	15.5	33.9	15.6	15.9	-	16.0	15.7	-	15.6	14.4	15.6	15.7	15.0	-	-	63.7	
2006	12.4	15.8	6.8	15.6	15.4	29.6	15.7	15.9	6.8	15.9	15.5	15.7	15.5	13.5	15.6	15.7	14.6	14.4	-	30.0	
2007	13.0	15.8	8.8	15.2	15.0	20.9	15.8	15.8	8.8	15.2	15.6	15.7	15.5	12.8	15.2	15.7	15.2	14.5	16.0	21.9	
2008	13.4	15.4	8.5	15.1	15.2	19.6	15.3	15.8	8.5	15.2	15.6	15.4	15.5	15.0	15.1	15.5	14.8	14.6	16.0	19.7	
2009	13.1	15.5	8.0	14.9	15.0	20.6	-	-	8.0	14.5	-	15.4	15.3	14.7	14.9	-	14.7	14.2	16.0	42.9	
2010	12.9	14.1	9.3	16.1	14.4	18.5	13.8	15.7	9.3	16.4	14.3	14.3	13.7	14.6	16.1	13.5	13.1	12.4	10.2	20.0	

자료: 헝가리 제무부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10〉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일본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기타	CV_w2			
	전 산업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CV_w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간접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2000	31.8	17.4	35.0	27.6	30.7	8.2	28.6	12.2	35.0	-	21.9	30.5	51.5	29.7	27.6	30.3	33.1	-	25.7	14.1
2001	27.5	14.2	26.7	26.8	28.4	4.5	28.0	10.4	26.7	-	22.9	28.5	29.3	28.6	26.8	29.1	29.0	-	25.2	6.5
2002	28.0	14.1	26.4	28.1	29.0	5.4	27.6	9.0	26.4	-	23.9	28.9	31.8	29.3	28.1	29.7	29.6	-	25.8	6.8
2003	27.8	15.1	26.5	29.0	28.6	4.9	29.6	10.3	26.5	-	24.9	28.8	30.0	28.9	29.0	29.1	29.3	-	24.7	6.1
2004	26.2	14.9	24.0	23.5	28.0	8.3	28.6	12.1	24.0	-	25.9	28.2	28.8	27.8	23.5	28.8	28.6	-	26.0	8.5
2005	26.2	12.4	24.4	27.5	27.5	6.9	25.4	10.6	24.4	-	26.9	27.8	28.4	28.3	27.5	28.6	28.4	-	23.7	8.1
2006	25.6	12.3	24.4	27.3	26.6	6.2	26.2	11.0	24.4	-	27.9	27.6	29.0	27.1	27.3	28.4	28.4	-	21.3	9.6
2007	24.5	9.6	24.9	27.1	24.4	5.8	26.8	7.6	24.9	-	28.9	26.5	29.0	27.2	27.1	28.3	27.7	-	17.9	13.5
2008	25.3	7.6	25.1	22.2	26.3	7.2	25.7	5.9	25.1	-	29.9	27.1	27.9	27.8	22.2	27.2	27.5	-	19.3	11.2
2009	25.7	7.8	25.6	27.4	25.2	5.9	25.3	5.3	25.6	-	30.9	27.5	26.9	28.1	27.4	26.0	26.9	-	14.2	13.6
2010	25.9	9.1	25.4	25.9	26.7	5.8	26.2	6.2	25.4	-	31.9	28.0	27.0	28.3	25.9	25.8	27.7	-	22.3	9.7

자료: 일본 국세청 편, 『國稅總統計年報書』,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11〉 산업별 평균 실용세율 및 변이계수: 노르웨이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기타	CV_w2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기타	1차 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2000	-	-	-	-	-	-	-	-	-	-	-	-	-	-	-	-	-	-	-	
2001	-	-	-	-	-	-	-	-	-	-	-	-	-	-	-	-	-	-	-	
2002	-	-	-	-	-	-	-	-	-	-	-	-	-	-	-	-	-	-	-	
2003	28.0	28.0	27.9	28.0	28.0	0.1	28.0	28.0	27.9	28.0	27.9	28.0	-	28.0	28.0	28.0	28.0	-	28.0	0.1
2004	28.0	28.0	27.9	28.0	28.0	0.1	28.0	28.0	27.9	28.0	27.9	28.0	-	28.0	28.0	28.0	28.0	-	28.0	0.1
2005	28.0	28.0	28.0	28.0	28.0	0.0	28.0	28.0	28.0	28.0	27.9	28.0	-	27.9	28.0	28.0	28.0	-	28.0	0.1
2006	28.0	28.0	28.0	28.0	28.0	0.0	28.0	28.0	28.0	28.0	27.9	28.0	-	27.9	28.0	28.0	28.0	-	27.9	0.1
2007	28.0	28.0	28.0	28.0	28.0	0.0	28.0	28.0	28.0	28.0	27.9	28.0	-	28.0	28.0	28.0	28.0	-	28.0	0.1
2008	27.9	27.7	28.0	28.0	28.0	0.5	28.0	27.7	28.0	28.0	27.9	28.0	27.8	28.0	28.0	28.0	28.0	28.0	28.0	0.5
2009	27.9	27.8	28.0	28.0	28.0	0.3	28.0	27.8	28.0	28.0	28.0	28.0	27.9	28.0	28.0	28.0	28.0	28.0	28.0	0.4
2010	27.8	27.3	28.0	28.0	28.0	1.0	28.0	27.3	28.0	28.0	27.9	28.0	27.9	28.0	28.0	28.0	28.0	28.0	28.0	1.1

자료: '노르웨이 국제청 합조사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12〉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스페인

(단위: %)

사업 연도	4개 대분류					13개 산업분류											기타	CV_m2
	1차 산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CV_w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 부동산업	판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보건업		
2000	-	-	-	-	-	-	-	-	-	-	-	-	-	-	-	-	-	-
2001	32.2	-	33.6	28.0	6.9	-	-	33.6	34.9	31.9	34.0	32.8	34.1	28.0	33.9	31.3	32.5	7.4
2002	32.5	-	34.1	28.2	6.1	-	-	34.1	34.7	32.5	33.7	33.5	33.9	28.2	33.8	31.0	32.2	6.4
2003	32.3	-	34.2	26.7	8.1	-	-	34.2	34.8	32.7	33.7	33.2	34.3	26.7	33.8	31.3	33.2	8.3
2004	32.3	-	33.9	27.0	7.7	-	-	33.9	34.8	32.7	34.2	33.6	34.5	27.0	33.4	32.4	32.9	8.0
2005	31.8	-	34.3	24.6	10.2	-	-	34.3	34.7	32.7	33.8	33.5	33.1	24.6	33.8	31.7	32.6	10.4
2006	31.9	-	34.3	25.6	10.0	-	-	34.3	34.9	32.9	34.0	33.9	34.4	25.6	34.1	32.0	33.0	10.2
2007	29.1	-	31.3	24.6	8.4	-	-	31.3	32.1	29.1	30.7	29.8	31.8	24.6	31.1	28.3	29.4	9.0
2008	28.0	-	29.4	24.7	5.4	-	-	29.4	29.8	26.7	29.0	28.6	29.7	24.7	29.2	27.1	28.1	6.4
2009	27.1	27.7	29.3	22.0	8.7	27.7	-	29.3	29.4	25.5	29.1	-	29.6	22.0	28.6	-	-	9.9
2010	28.0	27.4	29.2	26.3	2.8	27.4	-	29.2	29.4	25.0	29.1	-	29.7	26.3	28.4	-	-	5.6

자료: '스페인 국제적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산업별 감면을 수준 비교

기업의 세부담 수준은 과세대상소득, 법인세율, 그리고 각종 공제감면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의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명목 법인세율, 또는 평균 실효세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평균 실효세율은 과세대상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액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감세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마다 법정 법인세율과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 실효세율만을 비교할 경우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한다.

김학수(2010)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실효세율 자체의 비교보다는 법정 최고세율 수준 대비 비과세 감면제도에 의해 얼마나 세부담이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법인세 감면을 수준과 법정 최고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많은 정보를 준다. 특히, 김학수(2010)에 의해 제기된 법인세 감면율은 각 국가의 법정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해당 국가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의해 축소된 세부담 축소 정도를 국가 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학수(2010)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인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법정세율이 $\tau\%$ 일 때, 법인세법과 다른 법에서 어떤 공제나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업 소득 1단위 증가에 따른 기업이 직면한 세금부담은 τ 가 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제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등에 의해 기업 소득 1단위 추가적 증가에 따라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이 γ 이라면 법인세법과 다른 법에 의해 감면된 법인세액은 $(\tau - \gamma)$ 가 되고 법정 한계세율 대비 법인세 감면 비율은 $(1 - \gamma/\tau) \times 100$ 이 된다. 여기서 τ 는 법정 한계세율을 나타내고 γ 는 추가적 기업소득 증가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나타내 주는 한계유효세율이 된다.¹²⁾

앞서 살펴본 국가별·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평균적으로 어떤 산업이 법정 최고세율 대비 얼마나 세금부담이 축소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산업 평균 감면율과 특정 산업의 감면율의 차이는 해당

12) 김학수(2010), p. 187에서 인용

산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비과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본 전산업 평균 감면율 대비 특정 산업의 감면율 수준의 차이는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세제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¹³⁾ 다시 말해서, 특정산업의 감면율에서 전산업 평균 감면율을 차감한 값이 양수이면 해당 산업이 평균적으로 보다 더 많은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그 값이 음수이면 해당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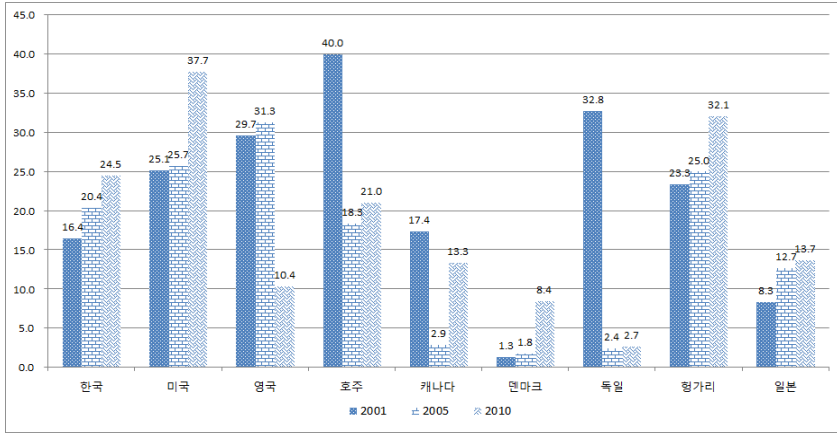
[그림 IV-4]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 감면율은 법정 최고세율 대비 24.5%로 비교대상 10개 국가들 중 미국과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¹⁴⁾ 우리나라의 평균 감면율은 2001년 16.4%에서 이후 추세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이를 보이는 국가 들로는 미국, 덴마크, 헝가리, 일본이 있다. 미국과 헝가리의 경우는 우리의 감면율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30% 초반 수준이고 덴마크와 일본의 감면율 수준은 2010년 기준 각각 8.4%와 13.7%로 우리나라 감면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를 보이는 전 산업 평균 감면율과 주요 업종별 감면율 차이를 다음 소절들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3) 특정 비과세 감면제도를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에 모두 허용하더라도 실질적 수혜수준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업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에 비해 소폭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 노력에 의해 비과세 감면 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산업별 조세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르웨이의 경우 법정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감면율 비교에서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10개국의 감면율 추이를 비교·검토한다.

[그림 IV-4] 전 산업 법인세 평균 감면율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표 IV-2>~<표 IV-12>와 각국의 법정 최고세율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전 산업 대비 제조업 평균 감면율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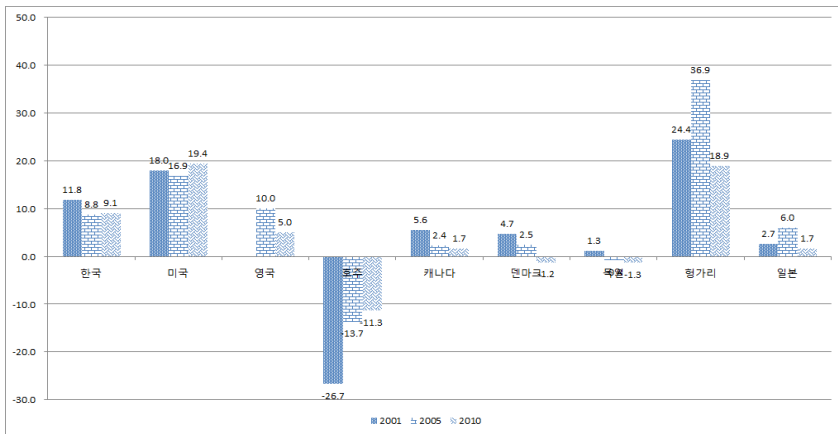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감면율은 전 산업보다 10%포인트 내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제조업의 평균 감면율은 전 산업 평균 감면율보다 11.8%포인트나 높았으나 2005년과 2010년에는 각각 8.8%포인트와 9.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비과세 감면제도가 제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고 활용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그림 IV-5]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제조업의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 감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크다. 미국과 헝가리의 경우 제조업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보다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우대 정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2010년 기준 5%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5%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였으나 점차 제조업과 전 산업 평균 감면율 사이의 차이가 축소되어 2010년에는 제조업의 경우 약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의 제조업 감면율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의 산업구조 특성상 제조업 중심의 세제를 운용할 유인이 적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 감면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의 제조업과 전 산업 평균 감면율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어 2001년 -26.7%포인트에서 2010년 -11.3%포인트로 대폭 축소됐다.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일본의 경우 매우 특이하게도 제조업 평균 감면율과 전 산업 사이의 차이가 2010년 1.7%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 산업 대비 제조업 평균 감면율의 차이가 6%포인트로 확대되기도 했으나 2010년에는 2001년 수준인 2.7%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V-5] 전 산업 대비 제조업 법인세 평균 감면율 차이 비교

(단위: %포인트)



자료: <표 IV-2>~<표 IV-12>와 각국의 법정 최고세율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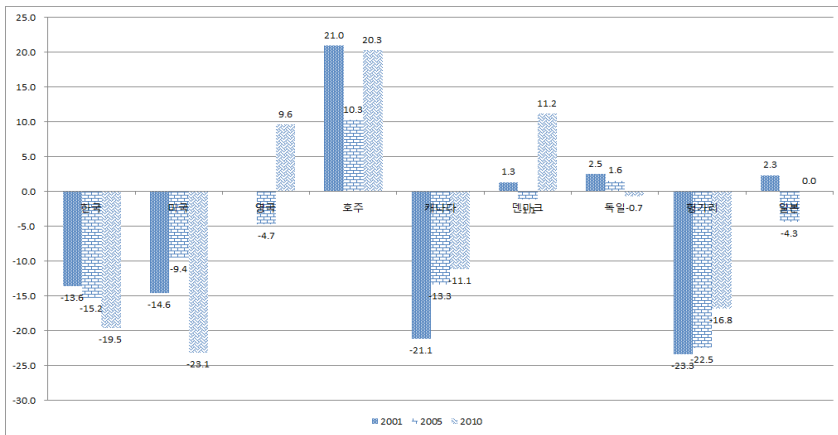
2) 전 산업 대비 금융보험업 평균 감면율 차이 비교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의 법인세 평균 감면율은 전 산업 평균 감면율보다 2010년 19.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 산업 대비 금융보험업의 법인세 평균 감면율과 전 산업 평균의 차이는 2001년 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보험업의 법인세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헝가리로 파악되지만, 미국만이 우리나라와 같이 추세적으로 금융보험업의 법인세 평균 감면율과 전 산업 평균의 차이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헝가리의 경우 그 차이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6] 전 산업 대비 금융보험업 법인세 평균 감면율 차이 비교

(단위: %포인트)



자료: <표 IV-2>~<표 IV-12>와 각국의 법정 최고세율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보험업과 전 산업의 평균 감면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의 경우에는 2005년 이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의 평균 감면율과 전 산업 평균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금융보험업의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영국과 덴마크의 금융보험업 평균 감면율은 전 산업 평균보다 각각 9.6%포인트와 11.2%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금융보험업이 여타 산업들보다 세계상 혜택을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호주 금융보험업의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1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1년과 2010년에는 20%포인트 정 더 높게 나타나며 오랜기간 금융보험업의 평균 감면율이 여타 산업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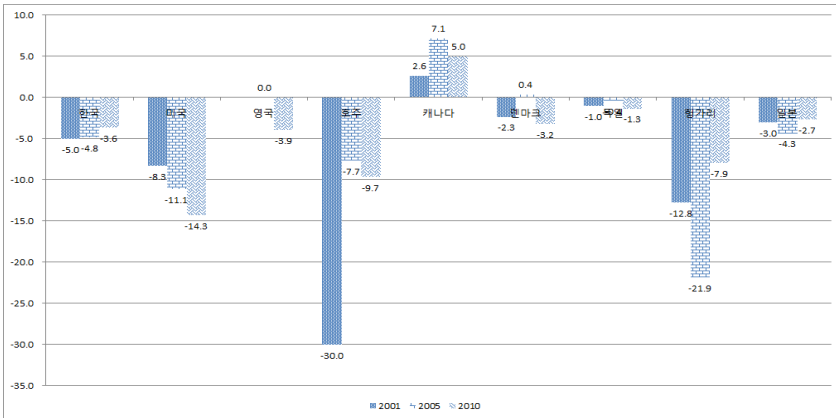
3) 전 산업 대비 기타 서비스업 평균 감면율 차이 비교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업의 평균 감면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5%포인트, 2005년 4.8%포인트, 2010년 3.6%포인트 정도 전 산업 평균 감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2000년 이후 정부에서 추진했던 세제상의 차별적 요인들을 축소하려는 정책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여타 서비스 산업의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서비스 산업의 평균 세부담이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기타 서비스업 평균 감면율은 전 산업 평균보다 5%포인트 안팎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독일, 일본, 영국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의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 감면율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3%포인트 안팎 수준으로 크지 않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IV-7] 전 산업 대비 기타 서비스업 법인세 평균 감면율 차이 비교

(단위: %포인트)



자료: <표 IV-2>~<표 IV-12>와 각국의 법정 최고세율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 호주, 헝가리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보다 기타 서비스업종의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 감면율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헝가리는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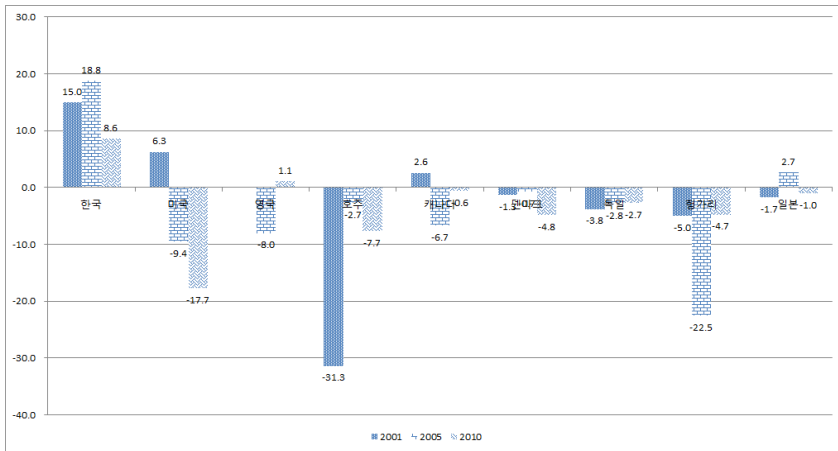
또는 2005년 이후 기타 서비스업의 평균 감면율과 전 산업 평균 감면율 사이의 차이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평균 감면율 차이 비교

2001년 15%포인트 수준이던 우리나라 농림어업 평균 감면율의 전 산업 평균 초과수준은 2005년 18.8%포인트로 확대된 이후 2010년 8.6%포인트로 축소됐다. 비교대상 국가들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농림어업의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림어업 평균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낮거나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법인세 평균 감면율 차이 비교

(단위: %포인트)



자료: <표 IV-2>~<표 IV-12>와 각국의 법정 최고세율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 전 산업 평균보다 6.3%포인트나 높은 수준의 농림어업 평균 감면율이 관측되나 이후 농림어업의 평균 감면율은 지속적으로 전 산업 평균 감면율보다 낮아지고 그 차이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을 비롯한 농업의 중요도가 큰 호주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농림어업의 감면율이 전 산업 평균 감면율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전 산업 평균과의 괴리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산업별 조세격차와 경제적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가. 전체 경제성장 및 고용률

특정 산업의 법인세 부담을 축소해 주는 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은 산업에 의해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산업별 조세격차의 확대에 의해 초래되는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남는 경우에만 조세격차 확대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산업별 조세격차 확대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CV_{w1} 과 CV_{w2} 의 증가로 나타나는 확대된 산업별 조세격차가 경제 전반의 성장률을 제고하고 고용률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긍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면, 특정 산업에 부여하는 세부담 경감제도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실증분석의 결과로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Hall and Jorgenson(1967)을 비롯하여 조세정책과 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산업별 조세격차의 수준이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례는 해당 산업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규모가 큰 OECD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Lee et al.(2008)의 실증연구가 현재 문헌조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연구이다. Lee et al.(2008)은 70개 국가들의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한계실효세율을 매 5년 단위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산업별 실효세율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Lee et al.(2008)과는 달리 본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들의 산업별 평균 실

효세율을 실제 법인세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조세격차를 변이계수로 측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Lee et al.(2008)은 산업별 실효세율의 표준편차를 산업별 조세격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측정된 산업별 조세격차는 법정세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간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 대비 표준편차의 크기로 정의되는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산업별 조세격차를 추정했다.

앞에서 살펴본 11개 국가들의 산업별 조세격차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별 조세격차가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질 GDP의 성장률과 고용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경제자유도,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율, 법인세 최고세율, CV_{w1} 과 CV_{w2} 의 조세격차 지표는 여기서 수행될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설정된다. 그리고 각 국가의 초기 경제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실질 GDP의 자연로그 치환 값을 추가적으로 설정한다.¹⁵⁾

〈표 IV-13〉의 추정결과는 평균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와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높을수록, 실질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제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실질 GDP 증가율로 삼고 경제자유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한 〈표 IV-13〉의 추정식 (1)과 (3)의 경우 경제자유도와 경제 성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자유도에 대한 추정계수는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측정한 조세격차 지표 CV_{w2} 를 설명변수로 설정한 식 (3)의 추정결과는 10%의 유의수준에서 CV_{w2} 에 대한 추정계수가

15) 주요 설명변수인 경제자유도는 〈The Fraser Institute의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를 활용한다. 또한 종속변수들과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율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를 사용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Tax Database의 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실질 GDP는 불변 PPP 미국 달러 기준으로 OECD StatExtracts에서 추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 조세격차가 확대될수록 경제 전체의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자유도 대신에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식 (2)와 (4)의 경우에는 13개 산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조세격차를 측정한 CV_w2의 추정계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산업별 차별적 조세체계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적 효율성 훼손이 특정산업을 육성하거나 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IV-13〉 산업별 조세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실질 GDP 성장률							
	(1)		(2)		(3)		(4)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경제자유도	4.6840	0.0277			4.0829	0.0996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0.2660	0.0000			0.2722	0.0000
법인세 최고세율	-0.0194	0.0746	-0.2229	0.2574	-0.0499	0.0668	-0.2429	0.5328
CV_w1	-0.1087	0.5703	0.0291	0.4840				
CV_w2					-0.1385	0.0952	-0.1230	0.0342
경제규모	-10.5236	0.0816	-5.8700	0.0938	-10.6540	0.0880	-4.9962	0.3787
N	68		63		63		63	
adj-R ²	0.29		0.7		0.29		0.65	

주: 1. 각 추정식에 국가 고정효과와 더미 포함

2. 1~4기 시차변수들을 이용하여 2SLS 추정방법으로 추정된 결과임

3. CV_w1과 CV_w2는 각각 4개 산업분류와 13개 산업분류 기준의 변이계수임

경제자유도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고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규제개혁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일 것이다. 경제자유도가 제고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왕성한 경제활동은 투자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는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조세격차가 전반적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의 설명변수들은 경제자유도, 노동시장 규제,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법인세 최고세율, 그리고 조세격차 지표를 고려한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노동시장 규제가 낮을수록, 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산업별 조세격차가 낮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표 IV-14〉에 제시된 추정결과는 법인세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사전적 예상과 부합하는 추정계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율의 경우 식 (4)에서만 10%의 유의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사전적 기대에 부합하는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추정식의 법인세율에 대한 추정계수의 부호는 사전적 기대와 부합하는 음의 부호를 갖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¹⁷⁾ 즉 〈표 IV-14〉의 추정결과는 경제자유도가 높거나 노동시장 규제가 낮을수록 또는 투자활동이 왕성할수록 고용률이 제고되며 산업별 조세격차의 축소도 고용률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경제자유도에 대한 추정계수는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산업별 조세격차에 대한 음의 추정계수는 대부분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6) 노동시장 규제는 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수의 하부지표이다. 노동시장 규제는 해고비용, 노동계약기간의 제한, 최저임금 등의 여러 지표를 하나로 통합한 composite index로서 시장규제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후 추정결과의 예상부호는 (+)이다.

17)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향후 보다 많은 국가들의 자료를 확보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14〉 산업별 조세격차가 고용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고용률											
	(1)		(2)		(3)		(4)		(5)		(6)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경제자유도	13.7360	0.0000					13.9243	0.0000				
노동시장 규제			11.2625	0.0000					10.6949	0.0000		
고장자본형성 증가율					0.1930	0.0112					0.3760	0.0594
법인세 최고세율	-0.2125	0.1622	-0.1216	0.1122	-0.2820	0.1073	-0.3561	0.0907	-0.0853	0.3183	-0.1904	0.3358
CV_w1	-0.4124	0.0009	-0.2036	0.0004	-0.1267	0.0018						
CV_w2							-0.4736	0.0000	-0.2235	0.0004	-0.4064	0.0814
N	96		96		90		96		96		96	
adj-R ²	0.61		0.72		0.90		0.45		0.70		0.67	

주: 1. 각 추정식에 국가 고정효과와 더미와 연도 더미 포함

2. 171 시차변수들을 이용하여 2SLS 추정방법으로 추정된 결과임

3. CV_w1과 CV_w2는 각각 4개 산업분류와 13개 산업분류 기준의 변이계수임

나. 서비스 산업의 성장

〈표 IV-15〉와 〈표 IV-16〉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비중에 규제개혁을 대변하는 경제자유도와 산업별 조세격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서비스 산업의 실질GDP 성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보여주는 〈표 IV-15〉를 살펴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GDP 성장률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성장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 (3)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한 식 (1)과 식 (3)의 경우 산업별 조세격차 지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성장률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식 (2)와 식 (4)에서 산업별 조세격차의 확대는 10%의 유의수준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노동시장의 규제가 약할수록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이 두 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들은 모두 1~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조세격차에 대한 추정계수는 식 (2)와 (3)을 제외하고 모든 추정식에서 5~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별 조세격차가 심화될수록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OECD 국가들 중 11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제조업의 성장세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추정계수는 노동시장 규제 정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인 식 (2)와 (4)를 제외한 모든 추정식에서 1~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18) 노동시장 규제 정도가 낮을수록 해당 변수는 높은 값을 가지므로 〈표 IV-16〉에 보고되어 있는 노동시장 규제 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면 노동시장 규제가 약할수록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며 법인세율 인하가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도의 제고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 왔으나 제조업 성장에 기인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OECD와 같이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5〉 산업별 조세격차가 서비스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실질 GDP 성장률							
	(1)		(2)		(3)		(4)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경제자유도	4.4227	0.0767			4.0047	0.0384		
제조업 성장률			0.0276	0.6465			0.0256	0.6889
법인세 최고세율	-0.5892	0.1548	-0.5462	0.2137	-0.6329	0.0826	-0.5322	0.2231
CV_w1	-0.0350	0.8109	-0.1737	0.0843				
CV_w2					-0.0402	0.1959	-0.0705	0.0695
경제규모	-16.599	0.0117	-20.643	0.0036	-17.955	0.0119	-20.907	0.0037
N	57		57		57		57	
adj-R ²	0.47		0.36		0.44		0.37	

주: 1. 각 추정식에 국가 고정효과와 더미 포함

2. 1~5기 시차변수들을 이용하여 2SLS 추정방법으로 추정된 결과임

3. CV_w1과 CV_w2는 각각 4개 산업분류와 13개 산업분류 기준의 변이계수임

〈표 IV-16〉 산업별 조세격차가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 제고에 미치는 영향

	고용비중											
	(1)		(2)		(3)		(4)		(5)		(6)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경제자유도	8.9926	0.0000					6.3176	0.0000				
노동시장 규제			1.2789	0.0158					1.5664	0.0009		
제조업 성장률					-0.0095	0.8678					-0.0607	0.3061
법인세 최고세율	-0.8629	0.0610	0.1132	0.6869	-1.2745	0.0062	-1.0217	0.0479	0.0389	0.8893	-1.2639	0.0046
CV_w1	-0.1509	0.0955	-0.1578	0.4234	-0.0087	0.9630						
CV_w2							-0.0598	0.0322	-0.1809	0.0819	-0.0790	0.0707
N	57		57		57		57		57		57	
adj-R ²	0.29		0.24		0.27		0.29		0.25		0.27	

주: 1. 각 추정식에 국가 고정효과와 더미와 연도 더미 포함

2. 1~5기 시차변수들을 이용하여 2SLS 추정방법으로 추정된 결과임

3. CV_w1과 CV_w2는 각각 4개 산업분류와 13개 산업분류 기준의 변이계수임

V. 경제 서비스화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서비스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 국민의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분야에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적 요인들이 제조업 등의 수준으로 조금씩 확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비과세 감면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농림어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의 확대는 경제 전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률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고용비중의 확대와 경제 전반의 성장 및 고용률 제고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자유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조세정책은 법인세최고세를 인하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1. 세수 중립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

과거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일부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에 유망 서비스업종을 포함시키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등의 정책 노력은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산업별 조세격차 지표들은 산업

별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의 결과물인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이 축소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 특정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은 추가적 세수손실과 함께 궁극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 일부 시도했던 바와 같이 특정 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왔던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산업의 특성상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효과가 있다면 법인세 비과세 감면 규모가 매우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법인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축소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신고연도 2012년 법인세 조세지출 규모는 7.3조원 규모이다. 비과세 감면 규모를 제외한 2012년 법인세 세수 규모가 45.9조원이므로 비과세 감면 제도가 전면 폐지될 때 발생할 법인세수인 53.2조원의 16% 수준이 조세지출의 형태로 법인의 세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산업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국세통계연보상의 총부담세액과 산출세액을 이용하여 업종별 공제감면세액 비중을 추정하면 아래의 <표 V-1>과 같다.¹⁹⁾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전체 법인 수 대비 제조업 법인 수 비중은 21.8%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은 70.8%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제도가 얼마나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

19)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과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가산세액과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2012년 기준 공제감면세액의 0.6%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업종별 총부담세액과 산출세액의 차이는 업종별 공제감면세액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V-1〉 산업별 조세지출 비중: 신고연도 2012년 기준

(단위: %)

업종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	신고법인 비중
농·임·어업	0.4	1.6
광업	7.9	0.2
제조업	70.8	21.8
전기·가스·수도업	1.0	0.3
건설업	3.2	16.8
도소매업	5.2	23.4
음식·숙박업	0.1	1.0
운수·창고·통신업	3.3	5.9
금융·보험업	1.0	3.4
부동산업	0.3	4.7
서비스업	6.9	19.3
보건업	0.1	0.3
기타 업종	0.0	1.3

주: 1.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은 업종별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의 차이가 전 산업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의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신고법인 비중은 전체 신고법인 수에서 업종별 신고법인 수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극단적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현재의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이 같게 되므로 산업별 조세격차는 현저히 축소되어 5.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 수준인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이 5.2% 수준으로 낮아지면, 〈표 IV-13〉의 식 (3)과 (4)에 따라 약 1.4%포인트 정도의 실질 GDP 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표 IV-14〉의 식 (4)~(6)에 따라 약 2.6~5.3%포인트이 고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기존에 특정산업에 주었던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함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가 상쇄하고 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별 조세격차를 17%에서 5%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정도 세수 중립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⁰⁾ 이처럼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다면, 〈표 IV-15〉의 추정결과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약 1.8%포인트 제고될 수 있으며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최소 0.8% 정도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표 IV-16〉의 추정결과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세수중립적 법인세율 인하에 의해 약 2.5~3.8%포인트 확대되고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에 따라 약 0.7~1.8%포인트 정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과세 감면제도의 혜택 축소 및 정책대상 확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은 조세왜곡을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비과세 감면제도도 이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혜택은 축소되어야 하고 정책대상자의 폭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은 관련 제도들의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대상만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비롯하여 많은 비과세 감면제도들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책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대상 산업을 열거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 생태계를 감안하여 정책대상 산업을 열거하는 방식의 법체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일부 특정 산업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 정서상 세제혜택을 주면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어려운 유흥, 도박 등의 일부 산업만을 정책대상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이 외의 산업은 모두 정책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있지

20) 조세지출예산서상의 2012년 법인세 조세지출 규모 7.3조원은 2012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240조의 약 3% 수준이므로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3% 정도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 유흥, 도박 등의 일부 업종은 정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해당 제도의 정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포지티브 방식의 폐단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서비스 산업을 위한 개별 지원제도에 대한 고려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에 의해 초래되는 자원배분을 왜곡함으로써 훼손된 효율성의 경제적 가치가 특혜를 받은 산업에 의해 창출되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보다 작을 때 합리화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는 제조업 성장 중심의 조세제도에 의해 확대된 산업별 조세격차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초래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지원받은 산업의 성장으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세수감소와 함께 또 다른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

21) 익명의 외부 검토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종에 특화된 조세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확대된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현재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단기적 세수감소를 감수하고 새로운 서비스업종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외세 산업별 조세격차를 성공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원의 확대와 함께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또 다른 세수감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정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거나 기존제도의 정책대상자를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인적 자본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²²⁾

이러한 투자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연구개발투자 등의 혁신활동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지출 및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으므로 현재의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시장관련 Database, 새로운 건축디자인, 광고, 경영자문, 시장조사에 지출되는 비용을 투자활동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지출은 지금까지는 기업의 비용으로만 인식되고 이러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지출을 투자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물적 자본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전통적 제조업종보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직접적 혜택의 확대와 함께 제조업종과의 조세격차 축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수반되는 세수감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의 재정여건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설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성향이나 특정한 경제행위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지위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자본은 물적 자본과 달리 무형자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상당히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2) 지식기반자본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ndrews and Criscuolo(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VI. 결론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단초를 산업별 조세격차의 축소에서 찾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에 상응하는 주요국의 산업별 조세격차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산업별 조세격차를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여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 전체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의 제고와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D 국가들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조세격차가 확대될수록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자유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세수 중립적 법인세 최고세율 및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과감한 축소와 함께 정책대상자는 모든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조세지원제도 개편은 여러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쉽게 달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서비스업종에 특화된 조세지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의 악화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수의 단기적 감수를 일정부분 감내할 수 있다면 서비스업종이 주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지원제도 및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을 위한 새로운 조세제도의 신설은 세수감소를 초래하며 단기적으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의 산업별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보하고 분석하고자 했으나, 산업별 법인세 과세자료를 발표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국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가용한 자료만을 협조받아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세계개편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논란과 정치과정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동연구를 통해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을 뛰어 넘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준구, 「OECD 회원국의 서비스 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김주훈·차문중(편), 『서비스부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7.
- 김학수,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을 추정 및 시사점」, 『재정학연구』, 제3권 제3호, pp. 117~203, 2010.
- _____, 『기업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기획재정부,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2011. 11. 3.
- _____,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2012. 5. 17.
-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I-」, 2008. 4. 25.
- _____,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II-」, 2008. 9. 18.
- _____,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III-」, 2009. 1. 14.
- _____, 「2012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2. 2. 22.
- _____, 「서비스 산업 차별 완화방안」, 2012. 9. 7.
- _____,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2013. 7. 4.
- 박연숙·최성호, 「주요선진국의 서비스 산업 정책사례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6.

- 박필재, 「국제비교를 위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R&D 현황과 과제」, 『Trade Biref』, No. 40, 국제무역연구원, 20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4.
- 보건복지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2013. 7. 10.
- 산업자원부,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및 중소기업범위 조정」, 2001. 9. 26.
- _____, 「비즈니스(사업)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2001. 11. 3.
-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2001. 10. 19.
- 재정경제부(관계부처합동),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2004. 3. 19.
- _____,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 12. 14.
- _____, 「제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7. 7. 30.
- _____, 「제3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007. 12. 10.
- 정보통신부, 「SI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2. 12. 13.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4.
-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2. 12. 13.
- 환경부, 「환경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2002. 12. 13.
-
- 노르웨이 국세청, *Industrial Corporate Tax Returns*, 미발간 협조자료.
- 독일 연방 통계청, *Finanzen und Steuern Jährliche Körperschaftsteuerstatistik*, 각 연도.
- 덴마크 재무부, *Industrial Corporate Tax Returns*, 미발간 협조자료.
- 미국 IRS, *Statistics of Income*, 각 연도.
- 스페인 국세청, *Industrial Corporate Tax Returns*, 미발간 협조자료.
- 영국 통계청, *Industrial Corporate Tax Returns*, 미발간 협조자료.
- 일본 국세청 편, 國稅廳統計年報書, 각 연도.
- 캐나다 통계청, *Financial and Taxation Statistics for Enterprises*, 각 연도.
- 헝가리 재무부, *Industrial Corporate Tax Returns*, 미발간 협조자료.

호주 *Tax Office, Taxation Statistics*, 각 연도.

Andrews, D. and C. Criscuolo, “Knowledge-based Capital, innov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4, 2013.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index*(<http://www.freetheworld.com/release.html>), 2014.

Hall, R.E. and D.W.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 57, pp. 391~414, 1967.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online.ibfd.org>), 2014.

Lee, Y., Sung, T. and T. Kim, “Cross-Sector Tax Differential and Economic Performance: A Cross-Country Analysis,” unpublished manuscript, 2008.

OECD, “Growth in Services: Fostering Employment, Productivity, and Innovation,”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2005.

_____,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2014a.

_____, *OECD StatExtracts*(<http://stats.oecd.org/>), 2014b.

UK HMRC, Website(<http://www.hmrc.gov.uk/rates/corp.html>), 201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http://www.worldbank.org>), 2014.

부 록 I 산업별 조세격차 측정상 국가별 산업분류

〈부표 1-1〉 국가별 산업분류 비교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노르웨이
13개 산업	12개 산업	13개 산업	12개 산업	13개 산업	13개 산업	13개 산업	11개 산업	9개 산업	12개 산업	10개 산업	11개 산업
농·임·어업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agriculture, fishing, hunting, trapping and support activities 외 2개 산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구분되지 않음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광업	mining and quarrying	mining	mining and quarrying (except oil and gas)	Mining and quarrying	Mining and quarrying of stones and earth	Mining and quarrying	mining	구분되지 않음	mining	구분되지 않음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service activities to oil and gas extract(광업은 제조업에 포함)
제조업	manufacturing	manufacturing	food and soft drink manufacturing 외 21개 산업	Manufacturing	Manufacturing	Manufacturing	textile manufacturing 외 6개 산업	extraction, metal mfg, chemicals 외 2개 산업	manufacturing	industry	Manufacturing and mining(광업 포함)

〈부표 1-1〉의 계속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노르웨이
13개 산업	12개 산업	13개 산업	12개 산업	13개 산업	13개 산업	13개 산업	11개 산업	9개 산업	12개 산업	10개 산업	11개 산업
전기·가스·수도업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y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utilities	Electricity, gas and steam supply 외 1개 산업	Energy supply 외 1개 산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외 1개 산업	구분되지 않음	energy and water supply	utilities	Energy and water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건설업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services	construction
판매업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wholesale trade 외 1개 산업	food, beverage, tobacco and farm product wholesalers-외 13개 산업	Wholesale and retail trade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household goods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wholesale trade 외 1개 산업	구분되지 않음	wholesale trade 외 1개 산업	trade	Domestic trade, hotels, rest(음식·숙박업 포함)
음식·숙박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accommodation cafes and restaurants	accommodation services 외 1개 산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Hospitality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drinking and eating places, hotels	hotels and catering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Accommodation and Catering	구분되지 않음(판매업에 포함)
운수·창고·통신업	transportation and storage 외 1개 산업	transport and storage 외 1개 산업	air transportation 외 4개 산업	Transportation 외 1개 산업	Transportation and storage 외 1개 산업	Transportation and storage 외 1개 산업	transport, communication and public utilities	transport and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외 1개 산업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부표 1-1〉의 계속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노르웨이
13개 산업	12개 산업	13개 산업	12개 산업	13개 산업	13개 산업	13개 산업	11개 산업	9개 산업	12개 산업	10개 산업	11개 산업
금융·보험업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finance and insurance	banking and other depository credit intermediation 외 9개 산업	Financial and insurance	Credit and insurance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finance and insurance	banking, finance and insurance	finance and insuranc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intermediation, insurance
부동산업	real estate activities	property and business services	real estate	Real estate activities	Land and housing, renting, Provision of economic services	Real estate activities	real estate	구분되지 않음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구분되지 않음(간접임대 포함)	Real estate, business activities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외 3개 산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외 5개 산업	publishing industries(except internet) 외 5개 산업	Knowledge-based services 외 5개 산업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외 5개 산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외 5개 산업	service	distribution and repairs 외 2개 산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외 5개 산업	Companies services	Other services
보건업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educational, healthcare and social assistance services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Health, veterinary and social services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구분되지 않음	구분되지 않음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Education and Health	구분되지 않음

〈부표 1-1〉의 계속

한국 13개 산업	오스트리아 12개 산업	호주 13개 산업	캐나다 12개 산업	덴마크 13개 산업	독일 13개 산업	헝가리 13개 산업	일본 11개 산업	영국 9개 산업	미국 12개 산업	스페인 10개 산업	노르웨이 11개 산업
기타	구분되지 않음	non-taxable/in ll company returns 외 1개 산업	구분되지 않음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of domestic personnel 외 2개 산업	not allocated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 producing activities of households for own use 외 1개 산업	other corporations 외 1개 산업	overseas activities 외 1개 산업	구분되지 않음	Others	Missing

주: 1. 독일의 농림어업의 경우 2005년까지는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ing and fish farming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한 가지로 구분함.
 2. 독일의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2008년까지는 Energy and water supply 한 가지였으나, 2009년부터는 Energy supply와 Water supply, sewerage,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activities의 두 가지로 구분함.
 3. 독일의 운수창고통신업은 2008년까지는 Transport and communication 한 가지였으나, 2009년부터는 Transportation and stora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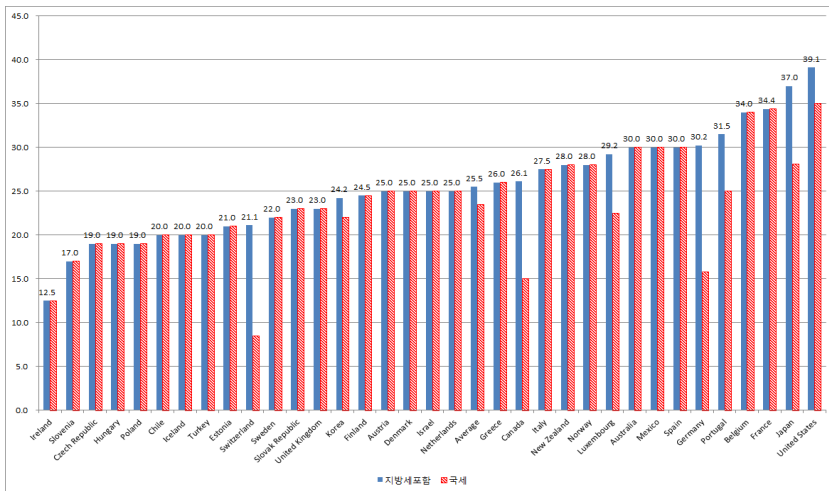
부 록Ⅱ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체계와 최근 동향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방세분 포함 24.2%로 34개 OECD 국가들 중 14번째로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 세율(지방세분 포함) 25.5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부도 II-1 참조)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고 미국의 법인세율이 39.1%로 제일 높음

[부도 II-1]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비교: 2013년 기준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2014)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34개 OECD 회원국 중 6개 회원국은 법인세율(지방세분 포함)을 2~5%포인트 정도 인상했으나 15개 회원국들은 법인세율을 0.1~6%포인트 정도 인하(부표 II-1) 및 (부표 II-2) 참조

- 2013년 OECD 평균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5.5%로 2008년 26% 대비 0.5%포인트 인하
- 국세분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3.5%로 2008년 24.1%보다 0.6%포인트 인하
- 국제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6개 국가들 중 칠레,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4개국은 OECD 평균 세율수준이거나 보다 낮은 수준
 - 칠레는 2011년 17%에서 20%로 인상했으나 OECD 평균 세율인하 25.5%를 하회
 - 그리스는 2009년 25%에서 2010년 24%, 2011년 20%로 5%포인트 인하했다가 2013년 26%로 인상함으로써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1%포인트 인상하여 OECD 평균 수준을 소폭 상회
 - 아이슬란드는 2008년 15%이던 법인세율을 2010년 18%, 2011년 20%로 인상했으나 OECD 평균 이하
 - 슬로바키아는 19%이던 세율을 2013년 23%로 인상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이하로 과세
 -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 중 멕시코(2%포인트)와 포르투갈(5%포인트)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
 - 멕시코는 2008년 28%에서 2010년 30%로 인상
 - 포르투갈은 국세분 법인세율은 2008년 이후 동일한 25%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분 법인세율을 1.5%에서 6.5%로 5%포인트 인상하여 2013년 지방세분 포함 법인세율 31.5%로 과세
- 국제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 주요 13개 국가들은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과 스위스 2개국은 지방세분 법인세율만 소폭 인하했음

- 캐나다의 국세분 법인세율은 2008년 19.5%이었으나 2009년 0.5%포인트, 2010년 1%포인트, 2011년 1.5%포인트, 2012년 1.5%포인트 인하해서 2008년 이후 총 4.5%포인트 인하한 15%로 과세
 - 캐나다는 지방세분 법인세율도 2008년 11.9%에서 2012년 현재 11.1%로 0.8%포인트 인하
 - 국세와 지방세분을 모두 고려할 경우 2008년 31%에서 2013년 26.1%로 5.3%포인트 인하
- 스웨덴은 2009년 1.7%포인트 인하한 후 2013년 4.3%포인트를 추가 인하하여 2008년 대비 6.0%포인트 인하하여 2013년 현재 22%의 단일세율로 과세
- 영국은 2011년 28%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2013년 현재 23%로 과세하고 있음
 - 영국 HMRC에 따르면²³⁾ 2015년부터는 현행 3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현재의 가장 낮은 세율인 20%로 단일화할 계획
- 이 외에 일본, 체코,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0.4~2%포인트 수준의 법인세율 인하
- 지방세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8개 OECD 국가들 중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지방세분 법인세율을 0.1~0.8%포인트 인하
 - 지방세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8개 국가: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
 - 미국(2012년)과 스위스(2013년)는 지방세분 법인세율만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인하

23) <http://www.hmrc.gov.uk/rates/corp.htm>

〈부표 II-1〉 국제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 추이: 국세분

(단위: %, %포인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
Australia	30.0	30.0	30.0	30.0	30.0	30.0	0.0
Austria	25.0	25.0	25.0	25.0	25.0	25.0	0.0
Belgium	34.0	34.0	34.0	34.0	34.0	34.0	0.0
Canada	19.5	19.0	18.0	16.5	15.0	15.0	-4.5
Chile	17.0	17.0	17.0	20.0	20.0	20.0	3.0
Czech Republic	21.0	20.0	19.0	19.0	19.0	19.0	-2.0
Denmark	25.0	25.0	25.0	25.0	25.0	25.0	0.0
Estonia	21.0	21.0	21.0	21.0	21.0	21.0	0.0
Finland	26.0	26.0	26.0	26.0	24.5	24.5	-1.5
France	34.4	34.4	34.4	34.4	34.4	34.4	0.0
Germany	15.8	15.8	15.8	15.8	15.8	15.8	0.0
Greece	25.0	25.0	24.0	20.0	20.0	26.0	1.0
Hungary	20.0	20.0	19.0	19.0	19.0	19.0	-1.0
Iceland	15.0	15.0	18.0	20.0	20.0	20.0	5.0
Ireland	12.5	12.5	12.5	12.5	12.5	12.5	0.0
Israel	27.0	26.0	25.0	24.0	25.0	25.0	-2.0
Italy	27.5	27.5	27.5	27.5	27.5	27.5	0.0
Japan	30.0	30.0	30.0	30.0	30.0	28.1	-2.0
Korea	25.0	22.0	22.0	22.0	22.0	22.0	-3.0
Luxembourg	22.9	21.8	21.8	22.1	22.1	22.5	-0.4
Mexico	28.0	28.0	30.0	30.0	30.0	30.0	2.0
Netherlands	25.5	25.5	25.5	25.0	25.0	25.0	-0.5
New Zealand	30.0	30.0	30.0	28.0	28.0	28.0	-2.0
Norway	28.0	28.0	28.0	28.0	28.0	28.0	0.0
Poland	19.0	19.0	19.0	19.0	19.0	19.0	0.0
Portugal	25.0	25.0	25.0	25.0	25.0	25.0	0.0
Slovak Republic	19.0	19.0	19.0	19.0	19.0	23.0	4.0
Slovenia	22.0	21.0	20.0	20.0	20.0	17.0	-5.0
Spain	30.0	30.0	30.0	30.0	30.0	30.0	0.0
Sweden	28.0	26.3	26.3	26.3	26.3	22.0	-6.0
Switzerland	8.5	8.5	8.5	8.5	8.5	8.5	0.0
Turkey	20.0	20.0	20.0	20.0	20.0	20.0	0.0
United Kingdom	28.0	28.0	28.0	26.0	24.0	23.0	-5.0
United States	35.0	35.0	35.0	35.0	35.0	35.0	0.0
단순평균	24.1	23.8	23.8	23.6	23.5	23.5	-0.6

자료: OECD Tax Database(2014)

〈부표 II-2〉 국제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추이: 지방세분 포함

(단위: %, %포인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
Australia	30.0	30.0	30.0	30.0	30.0	30.0	0.0
Austria	25.0	25.0	25.0	25.0	25.0	25.0	0.0
Belgium	34.0	34.0	34.0	34.0	34.0	34.0	0.0
Canada	31.4	31.0	29.4	27.6	26.1	26.1	-5.3
Chile	17.0	17.0	17.0	20.0	20.0	20.0	3.0
Czech Republic	21.0	20.0	19.0	19.0	19.0	19.0	-2.0
Denmark	25.0	25.0	25.0	25.0	25.0	25.0	0.0
Estonia	21.0	21.0	21.0	21.0	21.0	21.0	0.0
Finland	26.0	26.0	26.0	26.0	24.5	24.5	-1.5
France	34.4	34.4	34.4	34.4	34.4	34.4	0.0
Germany	30.2	30.2	30.2	30.2	30.2	30.2	0.0
Greece	25.0	25.0	24.0	20.0	20.0	26.0	1.0
Hungary	20.0	20.0	19.0	19.0	19.0	19.0	-1.0
Iceland	15.0	15.0	18.0	20.0	20.0	20.0	5.0
Ireland	12.5	12.5	12.5	12.5	12.5	12.5	0.0
Israel	27.0	26.0	25.0	24.0	25.0	25.0	-2.0
Italy	27.5	27.5	27.5	27.5	27.5	27.5	0.0
Japan	39.5	39.5	39.5	39.5	39.5	37.0	-2.5
Korea	27.5	24.2	24.2	24.2	24.2	24.2	-3.3
Luxembourg	29.6	28.6	28.6	28.8	28.8	29.2	-0.4
Mexico	28.0	28.0	30.0	30.0	30.0	30.0	2.0
Netherlands	25.5	25.5	25.5	25.0	25.0	25.0	-0.5
New Zealand	30.0	30.0	30.0	28.0	28.0	28.0	-2.0
Norway	28.0	28.0	28.0	28.0	28.0	28.0	0.0
Poland	19.0	19.0	19.0	19.0	19.0	19.0	0.0
Portugal	26.5	26.5	26.5	28.5	31.5	31.5	5.0
Slovak Republic	19.0	19.0	19.0	19.0	19.0	23.0	4.0
Slovenia	22.0	21.0	20.0	20.0	20.0	17.0	-5.0
Spain	30.0	30.0	30.0	30.0	30.0	30.0	0.0
Sweden	28.0	26.3	26.3	26.3	26.3	22.0	-6.0
Switzerland	21.2	21.2	21.2	21.2	21.2	21.1	-0.1
Turkey	20.0	20.0	20.0	20.0	20.0	20.0	0.0
United Kingdom	28.0	28.0	28.0	26.0	24.0	23.0	-5.0
United States	39.3	39.1	39.2	39.2	39.1	39.1	-0.2
단순평균	26.0	25.7	25.6	25.5	25.5	25.5	-0.5

자료: OECD Tax Database(2014)

- OECD 국가들 중 3단계 이상의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벨기에, 영국, 미국인 것으로 파악됨(〈부표 II-3〉 참조)
- 호주를 비롯한 23개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
- 캐나다, 프랑스 등 7개 국가들은 2단계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음

〈부표 II-3〉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구조 비교: 2014년 기준

단계	국가 수	국가
1단계	23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2단계	7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3단계 이상	4	한국(3단계), 영국(3단계, 2015년 단일세율 예정),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주: 단계는 과세표준 금액기준으로 이를 적용되는 세율구간으로 산정,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조항(특정 조건 만족시 세액공제 또는 감면 등)은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2014)

1) 3단계 이상의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

- 미국의 법인세율 체계는 매우 복잡한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의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일정 구간까지 법인세율이 38~39%로 증가되다가 특정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
- 과세대상 소득이 원화 기준 3억 5,225만원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장 낮은 세율 15%부터 25%, 34%, 3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다가 소득이 더욱 증가하여 105억 1,500만원에 이르는 수준까지는 34%의 세율을 적용
 - 34%의 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원화 환산 약 7,886만원에서 1억 515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세율로 기업이 성장해서 일정 문턱을 넘는 경우 매우 낮은 소득 수준에 적용했던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표면세율 최고수준이 35%를 넘지 않도록 설계

- 낮은 소득 수준에서 이미 최고세율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세율체계가 기업 성장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
- 이후 법인의 소득규모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다시 세율이 인상되며 초과누진세제의 형태를 갖지만 원화 기준 1억 515만원~3억 5,225만원 구간에 적용됐던 39%보다 1%포인트 낮은 38%가 이후 소득구간의 최고세율로 설정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원화기준 192억 7,750만원을 초과하는 최고구간의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35%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
- 이러한 형태의 세율구조도 역시 중견기업들이 소득수준이 200억원 이상의 보다 큰 법인으로 성장할 추가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부표 II-4〉 미국의 법인세율

과세구간(\$)	현행세율	표면세율
0~50,000 (0~약 5,257만원)	15%	15%
50,001~75,000 (약 5,257만원 초과~약 7,886만원)	\$7,500 + \$50,000 초과분 25%	15~18.33%
75,001~100,000 (약 7,886만원 초과~약 1억 515만원)	\$13,750 + \$75,000 초과분 34%	18.33~22.25%
100,001~335,000 (약 1억 515만원 초과~ 약 3억 5,225만원)	\$22,250 + \$100,000 초과분 39%	22.25~34%
335,001~10,000,000 (약 3억 5,225만원 초과~ 약 105억 1,500만원)	\$113,900 + \$335,000 초과분 34%	34%
10,000,001~15,000,000 (약 105억 1,500만원 초과~ 약 157억 7,250만원)	\$3,400,000 + \$100,000,000 초과분 35%	34%
15,000,001~18,333,333 (약 157억 7,250만원 초과~ 약 192억 7,750만원)	\$5,150,000 + \$15,000,000 초과분 38%	34.33%
18,333,334~ (약 192억 7,750만원 초과~)	단일세율 35%	35%

주: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1=1,051.5원)

자료: <http://online.ibfd.org/>

- 영국의 경우 현재 3단계 형태의 법인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 대상 소득 150만파운드(원화환산 약 25.5억원) 초과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014년 현재 21%이고 가장 낮은 세율은 20%로 30만파운드(약 5억원) 이하 소득에 적용되고 있음
- 중간 구간(30만~150만파운드)의 경우 소정의 산식에 따라 세부담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의 차이가 3%포인트에 지나지 않음
- 또한 2015년에는 누진구조의 세율 구조를 폐지하고 20%의 단일세율로 개편할 계획

〈부표 II-5〉 영국의 법인세율

대상	과세소득(£)	세율 ¹⁾
일반법인	1,500,000 이상 (약 25억 5,924만원 이상)	21% ²⁾
소규모법인	300,000 이하 (약 5억 1,185만원 이하)	20%

주: 1) 21%의 기본세율은 과세소득이 £1,500,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고 과세소득이 £300,000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적용됨. 과세소득이 £300,000 ~ £1,500,000 사이인 경우 특정 계산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확대됨.

2) 2014회계연도(2014.4.1~2015.3.31)의 세율이며, 2015 회계연도에는 20%로 인하될 예정임

1.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1=1,706.16원)

자료: <http://online.ibfd.org/>

- 4단계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벨기에의 법인세율 구조도 미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득규모 수준인 원화기준 1억 2,000만원~4억 2,900만원 구간에 최고세율 34.5%를 부과하고 4억 6,50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세율인 33%를 적용하며 법인세율 누진구조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가장 낮은 세율인 24.25%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원화 기준 3,325만원 이하 수준에 불과하고 31%의 중간 세율 적용 구간은 원화기준 3,325만원~1억 2,000만원 구간임

- 이후 원화환산 소득 1억 2,000만원~4억 2,900만원 구간에 명목상 가장 높은 34.5%의 세율로 과세하고 이후 최고구간에는 33%의 다소 낮은 세율로 과세하며 표면세율은 24.25%에서 33.99%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 여러 단계의 세율구조를 갖고 있지만 구간별 소득기준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며 최고세율을 중소기업 소득수준에 적용하고 이후 기업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기업의 성장을 촉진

〈부표 II-6〉 벨기에의 법인세율

과세구간(EUR)	현행세율	표면세율
0~25,000 (0~약 3,325만원)	24.25%	24.98%
25,001~90,000 (약 3,325만원 초과~약 1억 2,000만원)	31%	31.93%
90,001~322,500 (약 1억 2,000만원 초과~약 4억 2,900만원)	34.5%	35.54%
322,500 초과 (약 4억 2,900만원 초과)	33%	33.99%

주: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EUR1=1,330.22원)

자료: <http://online.ibfd.org/>

2) 2단계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

-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 경우 소득구간보다는 기업의 법적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율구조는 아래의 표들을 참조
- 소득구간을 동시에 사용하여 세율구조를 규정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200억원 수준의 높은 기준금액은 찾아보기 어렵고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차이도 우리나라의 12%포인트(최고 22%, 최저 10%)만큼

차이 나는 국가들도 찾아보기 어려움

- 프랑스의 경우 매출액 11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원화 환산 5,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
- 일본은 중소기업의 7,674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만 19%(임시조치로 2015년 3월말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25.5% 적용
- 캐나다의 국세분 법인세율의 경우 4.7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 11%를 적용하고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5% 적용

〈부표 II-7〉 프랑스의 법인세율

대상	세율
일반법인	33 ⅓%
중소기업 ¹⁾	15%

주: 1)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이란 개인이 지분을 75% 이상 소유하고 매출이 EUR 763,000(약 10억원) 이하인 기업이며, EUR 38,120(약 5,000만원)까지 15%로 과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인 33 ⅓%로 과세함

1. 매출이 EUR 763,000(약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3.3%의 surcharge가 부과되며, surcharge를 포함한 세율은 34.43%임

2.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EUR1=1,330.22원)

자료: <http://online.ibfd.org/>

〈부표 II-8〉 일본의 법인세율

과세구간(¥)	현행세율	
	중소기업	일반기업
8,000,000 이하 (약 7,674만원 이하)	19% ¹⁾	25.5%
8,000,000 초과 (약 7,674만원 초과)	25.5%	25.5%

주: 1) 경기 부양을 위한 임시조치로 2012.4.1~2015.3.31 기간에 15% 적용

1.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JPY100=959.24원)

자료: <http://online.ibfd.org/>

〈부표 II-9〉 캐나다의 법인세율

과세구간(CAD)	현행세율
일반법인	15%
중소기업법인의 0~CAD500,0001 (0~약 4억 7,043만원)	11%

주: 1) CCPC(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의 수익 중 CAD500,000(약 4억 7,043만원)까지는 11% 세율이 적용됨

1.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CAD1=940,86원)

자료: <http://online.ibfd.org/>

- 그 밖에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도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율구조는 아래의 표를 참조
- 포르투갈의 경우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의 차이가 12.5%포인트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 세율의 차이가 헝가리 9%포인트, 룩셈부르크 1%포인트, 네덜란드 5%포인트로 우리보다 작음
-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적용 기준 소득금액도 21억 3,500만원 수준의 헝가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 1,995만원, 네덜란드 2억 6,604만원 수준

〈부표 II-10〉 헝가리의 법인세율

과세소득(HUF)	세율
5억원 이하 (약 21억 3,500만원 이하)	10%
5억원 초과 (약 21억 3,500만원 초과)	19%

주: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HUF1=4.27원)

자료: <http://online.ibfd.org/>

〈부표 II-11〉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과세소득(EUR)	세율
15,000 이하 (약 1,995만원 이하)	20%
15,000 초과 (약 1,995만원 초과)	21%

주: 1. employee fund를 위해 7% surcharge 부과됨

2.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EUR1=1,330.22원)

자료: <http://online.ibfd.org/>

〈부표 II-12〉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과세소득(EUR)	세율
200,000 이하 (약 2억 6,604만원 이하)	20%
200,000 초과 (약 2억 6,604만원 초과)	25%

주: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EUR1=1,330.22원)

자료: <http://online.ibfd.org/>

〈부표 II-13〉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과세구간(EUR)	현행세율
0~15,000 (0~약 1,995만원)	17%
15,001~ (약 1,995만원 초과)	EUR 2,550+ EUR 15,000 초과분 23%

주: 1. 수익 EUR 1.5 million(약 19억 9,533만원) 초과는 surtax 3% 부과되고, EUR 7.5 million(약 99억 7,665만원) 초과는 5% 부과됨

2.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임(EUR1=1,330.22원)

자료: <http://online.ibfd.org/>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 학 수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산업별 조세격차에 대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통계연보 수준의 주요국의 산업별 법인세 부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 전체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도 제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또한 OECD 국가들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반드시 유발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On the Growth and Job Creation in Service Sector

Hag-Soo Kim

In this research report, it is discussed how the preferential tax regime in favor of a certain industry such as manufacturing industry should be reformed to foster the growth and job creation of the whole economy as well as service sector. For the case of Korea, the level of cross-sectoral corporate tax differences has been increased since 2000. In addition, it i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except US among 11 OECD countries. Empirical analyses suggest that the growth and job creation in both whole economy and service sector can be fostered by higher economic freedom, lower corporate tax rate, and lower the level of cross-sectoral tax differences. It is also found that 11 OECD countries data do not support for the hypothesis that the growth of manufacturing sector induces the growth and job creation in service sector. In turn,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preferential tax regime in favor of manufacturing sector should be addressed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cross-sectoral tax differences.

■ 저자약력

김 학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소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4-03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발행	행	2014년 12월 31일
저자	자	김학수
발행인	인	옥동석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1-466호
정가	가	6,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일지사 (02)503-6971
I S B N		978-89-8191-733-3 93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